

[확산탄(집속탄)금지협약 발효에 즈음한 토론회]

확산탄(집속탄) 전면 폐기와 금지협약 가입의 필요성

≡ 일시 : 2010년 7월 30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 원혜영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무기제로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확산탄(집속탄)금지협약 발효에 즈음한 토론회]

확산탄(집속탄) 전면 폐기와 금지협약 가입의 필요성

⌘ 일시 : 2010년 7월 30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 원혜영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확산탄(집속탄)금지협약 발효에 즈음한 토론회>

확산탄(집속탄) 전면 폐기와 금지협약 가입의 필요성

- 사 회 : 조영선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인사말 : 원혜영 국회의원 (민주당, 통상외교통일위원회)
- 발 제 : 확산탄금지협약의 의의와 문제점 ... 60p
이재승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 토론 1 : 한국에서의 확산탄(집속탄) 문제와 전면 금지의 필요성 ... 50p
박석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활동가)
- 토론 2 : 집속탄(확산탄) 반대 운동에서 NGO의 역할 및 외국 사례 ... 59p
최정민 (무기제로팀 활동가)

<확산탄 토론회 인사말>

오늘 토론회에 함께 자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는 8월, 전 세계 106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확산탄금지협약이 정식 발효됩니다.

2006년 확산탄금지협약 체결 움직임이 본격화 된지 불과 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확산탄이 안고 있는 반인도적 문제점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확산탄의 생산, 수입,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확산탄의 무차별성과 반인도성에 대한 공론화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확산탄은 큰 폭탄에서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이 쏟아져 나와 공중에서 광범위한 면적에 흩뿌려지는 무기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피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개별 민간인은 물론 시민 주거지역은 공격목표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는 제네바 협약 제1부속의정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무기인 것입니다.

확산탄에 의한 사상자 중 민간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5~40%에 이르는 불발물로 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위협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국내에서도 확산탄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합리적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학계와 함께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장해제조약으로 평가 받는 1997년 대인지뢰금지조약 체결 이후

지뢰에 의한 사상자가 1/5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확산탄에 관한 논의가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레바논에서 고통 받고 있는, 앞으로 확산탄으로 인해 고통 받을지도 모르는 세계 시민을 위해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국가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합니다.

수잔 손택의 <타인의 고통>의 일부를 옮기며 인사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 고통 받는 그들과 우리가 똑같은 지도상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특권이 그들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숙고해 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과제다”

감사합니다.

2010. 7. 30
국회의원 원혜영

[발제문]

확산탄금지협약의 의의와 문제점

이재승 건국대 교수

< 차례 >

1. 머리말
2. 인도법의 원칙과 확산탄의 불법성
3. 협약의 성립과정
4. 협약의 의의와 정당성
5. 협약의 기본내용
6. 협약의 한계와 한국의 현실

1. 머리말

전쟁과 평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한다. 모든 전쟁을 불법시하는 평화주의자, 전쟁의 명분과 방법을 엄밀하게 제한하려는 정전론자, 국익이나 군사적 필요를 통해 전쟁을 정당화하는 현실주의자가 그것이다.¹⁾ 전쟁의 정치 앞에서 목소리는 정전론자들과 현실주의자들간의 대결이다. 개전(開戰)의 법(jus ad bellum)과 관련해서는 방어전쟁에서 시작하여, 인도적 개입, 선제방어적인 공격, 테러와의 전쟁까지 확장된다. 정의로운 전쟁(bellum iustum)이 착취당하면서 정의로운 전쟁과 침략전쟁간의 범주적 경계선마저 흐릿해진다.

교전(交戰)의 법(jus in bello)과 관련해서도 정전론과 현실주의는 대립한다. 현실

1) 고전적 정전론과 현실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교는 Kemp, Kenneth W., *Just-War Theory & Non-Pacifist Rivals*,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1993/10/10.

주의자는 ‘전시에는 법이 침묵한다(silent leges inter arma)’는 고전적 허무주의²⁾에 기대어 군사적 필요성(military necessity)을 절대시한다. 이에 대항하여 정전론자들은 모든 적대행위가 국제인도법에 부합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인도법은 민간인 또는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 불필요하고 과도한 희생, 부상자 또는 포로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우 등을 금지한다. 국제인도법은 한 마디로 인도주의 원칙(principle of humanity)을 전시에도 구현하려는 것이다.³⁾ 법원칙의 정립과 해석 어느 경우에도 정전론자와 현실주의자의 대립은 지양할 수 없는 듯이 보인다. 전쟁법에서 거론되는 군사적 필요성⁴⁾이라는 개념과 이에 맞서는 불필요한 희생(unnecessary suffering), 과도한 피해(superfluous injury)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지만, 국제사회는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여 국제인도법과 국제관습법을 발전시켜왔다.⁵⁾ 무기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일찍이 1868년의 페테스부르크 선언 이래로 비인도적인 무기인 덤덤탄, 독가스, 화학무기, 생물무기, 실명레이저 무기, 대인지뢰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틀을 마련해왔다.⁶⁾ 이러한 무기금지에 관한 국제인도법의 마지막 장은 확산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이다.⁷⁾ 이 협약은 2008년 5월 30일 ‘확산탄

2) 전쟁과 관련한 도덕적 허무주의에 대한 분석은 Wasserstrom, Richard, “On The Morality of War: A Preliminary Inquiry”, *Stanford Law Review* Vol. 21(1969), 1636쪽 이하.

3) Orend, Brian, War, <http://plato.stanford.edu/entries/war/>, 최종검색일 2010-7-15

4) 군사적 필요성의 기원에 대한 검토는 Carnahan, Burrus M., “Lincoln, Lieber and The Law of War: The Origins and Limits of the Principle of Military Necessity”,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2(1998), 213쪽 이하. 리버 코드(Lieber's Code 행정명령 100호)는 군사적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14조. 현대문명국가에서 이해하는 바 군사적 필요성은 전쟁의 종결을 달성하는 데에 불가피하며, 전쟁에 관한 현대의 법과 관행에 일치하는 조치들의 필요성이다.

제15조 군사적 필요성은 무장한 적, 그리고 전쟁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그 파괴가 불가피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의 온갖 직접적인 파괴를 허용한다. ...공개적인 전쟁에서 서로를 향해 무기를 잡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타자와 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도덕적 존재이기를 중단한 것이 아니다.

제16조. 군사적 필요는 잔혹행위, 즉 고통과 복수를 위한 고통의 부과를 용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군사적 필요성은 평화회복을 의미없이 곤란하게 하는 적대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5) 군사적 필요성과 인도성의 상충과 균형에 대해서는 Schmitt, Michael N., “Military Necessity and Humanity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Reserving the Delicate Balance”,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50(2010), 795쪽 이하.

6) 무기법의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McCormick, Timothy, “From Solferino To Sarajevo: A Continuing Role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Melbourne University Law Review* Vol. 21(1997), 621쪽 이하.

에 관한 더블린 외교회의(the Dublin Diplomatic Conference on Cluster Munitions)’에서 채택되었으며, 2010년 8월 1일자로 시행된다. 2010년 7월 21일 현재 서명국(signatories)은 107개국이고, 비준 절차를 마친 국가는 37개국이다.⁸⁾

확산탄의 작동방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모탄인 확산탄(Cluster Munitions)은 수십 내지 수백 개의 자탄들(submunitions)을 다발로 묶어 두는 상자와 같다. 전투기에서 투하된 모탄이 공중에서 폭발함과 동시에 자탄들을 산포(散布)하여 지상에서 폭발하게 함으로써 통상 대형 폭탄 하나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면적보다 훨씬 광범위한 지역을 일시에 초토화시킨다. 게다가 투하 즉시 폭발하지 않는 자탄들은 땅속에 파고 들거나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에 접촉한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 확산탄은 1943년에 처음 사용된 이래로, 인도차이나 전쟁⁹⁾시 미군이 대량으로 살포하였으며 최근에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 사용하였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이¹⁰⁾, 코소보에서는 나토가¹¹⁾, 그루지아에서는 러시아가 사용하는 등¹²⁾ 거의 모든 전쟁에서 효과적인 무기로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확산탄의 사용이 구별의 원칙(principle of distinction), 무차별공격의 금지

7) 확산탄금지운동가들의 블로그는 <http://www.banadvocates.org/>

8) http://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XXVI-6&chapter=26&lang=en, 최종검색일: 2010-7-13

9) Carmel Capati, “The Tragedy of Cluster Bombs in Laos: An Argument for Inclusion in the Proposed International Ban on Landmines”, *Wisconsin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16(1998), 227쪽 이하.

10) Stewart, James G.,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Lebanon”,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Vol. 5(2007), 1039쪽 이하.

11) U.N. Inst. for Disarmament Research, The Humanitarian Impact of Cluster Munitions, U.N. Doc. UNIDIR/2008/1 (2008), <http://www.unidir.org/pdf/ouvrages/pdf-1-92-9045-008-D-en.pdf>; McDonnell, Thomas Michael, “Cluster Bombs over Kosovo: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rizona Law Review* Vol. 44(2002), 31쪽 이하.

12) Docherty, Bonnie, Russian Attacks in Georgia Show Need for Convention on ClusterMunitions, *Jurist*, Aug. 19, 2008, <http://jurist.law.pitt.edu/hotline/2008/08/russian-attacks-in-georgia-show-need.php>; The European Union has called on Russia and Georgia to clear the cluster-munition remnants left behind by this conflict. “EU Calls on Russia, Georgia to Clear Cluster Bombs”, *EUbusiness*, 2008-09-02, <http://www.eubusiness.com/news-eu/1220365022.62/> 참조.

(principle of discrimination), 불필요한 희생의 금지(prohibition to cause superfluous injuries or unnecessary suffering), 비례성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 등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³⁾ 이를 사용한 국가는 국제인도법을 위반함으로써 전쟁범죄나 국가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다.

특정 무기의 사용이 국제인도법에 위반하는지에 대해서는 모호성이 존재한다. 그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협약이 있지 않는 한,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점에서 확산탄금지협약은 확산탄(사용)의 불법성을 공식화하고, 모호성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협약에 따르면, 협약당사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확산탄을 사용하거나 확산탄을 개발, 생산, 취득, 비축, 보유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협약의 당사국에게는 금지된 활동을 제3자에게 하도록 지원, 장려, 유도해서는 안 된다(제1조). 그러나 확산탄금지협약은 모든 확산탄을 간명하게 근절한 것은 아니다. 협약은 일정한 범위와 수준에서 확산탄을 허용하고, 심지어 확산탄 보유국들의 로비와 압력에 의해 적용배제 상황을 예정하고 있다.¹⁴⁾ 트로이 목마라고 할 수 있다.

이 발제문에서 필자는 확산탄의 법적 성격, 협약의 성립과정, 협약의 국제법적 의의와 정당성, 협약의 주요내용, 마지막으로 협약의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인도법의 원칙과 확산탄의 ‘불법성’

1) 국제인도법의 원칙

확산탄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확산탄이 오로지 확산탄금지협약

13) 이러한 원칙들에 대한 간결한 설명은 Wiebe, Virgil, “For Whom the Little Toll: Recent Judgments by International Tribunals on the Legality of Cluster Munitions”, *Pepperdine Law Review* Vol. 35(2008), 899쪽 이하.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원칙들의 영역을 명료하게 확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14) 확산탄조약은 대인지뢰금지협약과 유사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협약 제21조의 비당사국과 협력에 관한 규정이다. 확산탄금지협약 제21조는 실제로 협약의 취지를 부정하는 규정이다.

에 의하여 ‘창설적으로’ 불법적인 무기라고 한다면, 확산탄금지협약의 비당사국들은 확산탄의 생산, 비축, 사용에 관하여 여전히 재량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비당사국도 확산탄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제인도법의 원칙을 통상 구별(distinction)의 원칙, 무차별공격배제(discrimination)의 원칙, 비례(proportionality)의 원칙으로 제시한다. 이 원칙들은 국제관습법으로 설명되기도 한다.¹⁵⁾ 국제적십자위원회가 펴낸 <국제관습인도법>은 ‘성질상 과도한 피해와 불필요한 희생을 야기하는 전투의 수단과 방법의 사용은 금지된다(The use of means and methods of warfare which are of a nature to cause superfluous injury or unnecessary suffering is prohibited)’는 규칙(70)을 국제관습법으로 확인하고 있다.¹⁶⁾ 비록 오래전이지만 이러한 원칙을 현대적으로 정식화한 것은 1868년 페터스부르그 선언이다. 선언은 전문에서 400g 이하의 폭발성 발사물을 규제하였다. 이 내용은 헤이그법(Hague Regulations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1908)에 다시 등장했으며,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수괴급전범재판에서 헤이그법이 최소한 1939년부터 관습법이 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최근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를 ‘국제인도법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주요원칙들 중의 하나’로 언급하였다.¹⁷⁾ 그러나 이러한 원칙(규칙 70)은 엄격한 법적인 성격을 갖는다기보다는 도덕적인 성격을 가질 뿐이라고 지적되기도 한다.

나아가 규칙(71)은 ‘성질상 무차별적인 무기의 사용은 금지된다(The use of weapons which is by nature indiscriminate is prohibited)’는 점을 국제관습법

15) Turns, David, “Weapons in the ICRC Study on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Journal of Conflict & Security Law*, Vol. 11(2006), 201쪽 이하.

16) Henckaerts, Jean-Marie & Doswald-Beck, Louise,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Vol. 1: Rules, Cambridge U. P., 2005, 237쪽 이하. 국제적십자가 발행한 연구서가 제시하는 규칙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국제인도법 분야의 관습법에 대한 비공식적인 법전화(codification)로 규정할 수 있다. 인도법의 형성과 확인(restatement)에 대해서는 Wilmshurst, Elisabeth & Breau, Susan, *Perspectives on the ICRC Study on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ambridge U. P., 2007, 15쪽 이하.

17) Legality of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of 8 July 1996, *ICJ Rep.* 1996, 226. para. 78.

으로 확인한다.¹⁸⁾ 이러한 정신은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에 명문화된 ‘구별의 원칙’, ‘무차별공격 금지의 원칙’¹⁹⁾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할 때 특정 무기가 그 자체로 불법적인 무기(illegal per se)로 확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금지조약이나 특정무기에 관한 별도의 관습법이 존재해야 하는지 여부이다.²⁰⁾ 최근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의 합법성’에 관한 권고의견에서 ICJ의 다수의견은 핵무기 자체를 불법화하는 협약이 없는 상태에서 핵무기가 국제관습법상 불법적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²¹⁾

다른 한편, 국제법원리의 성긴 구조(open texture)²²⁾ 또는 조약법규정의 흠결이나 미완성 상태(incompleteness)로 인하여 조약이 특정무기를 명시적으로 (규제

18) Henckaerts, & Doswald-Beck, 앞의 책, 244쪽 이하.

19) 1977년 제네바 협약 제1추가의정서((1977 Additional Protocol I to the Geneva Conventions) 제51조 (2)와 제2추가의정서 제13조 (2)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기본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구별의 원칙). 제1추가의정서 제51조 (4)는 ‘무차별 공격’을 금지하고 있다.

20) Turns, 앞의 글, 214쪽.

21) Advisory Opinion, in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July 8, 1996, General List No. 95, 266쪽 이하.

“법원은 (1)13대 1로, 권고의견에 대한 요청을 따르기로 결정하며, 유엔총회(General Assembly)가 기탁한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A (만장일치로) 국제관습법이나 국제조약법 어디에도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은 없다. B. (11 대 3으로) 국제관습법이나 국제조약법 어디에도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 자체에 대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금지를 정한 규정은 없다. C. (만장일치로) 핵무기를 수단으로 하여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에 위반하고, 제51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무력의 위협과 행사는 불법적이다. D. (만장일치로)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은 무력충돌시 적용되는 국제법의 요건, 특히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규칙들의 요건들, 나아가 명시적으로 핵무기를 취급하는 조약과 여타 약정의 특수한 의무에 부합하여야 한다. E. (7대 7 의장의 결정권) 앞에서 언급한 요건에 비추어 볼 때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은 일반적으로 무력충돌시 적용되는 국제법의 규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인도법의 원칙과 규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제법의 상황과 이용가능한 사실관계들을 고려하건대, 법원은 국가의 존망이 경각에 달린 극단적인 자위의 상황에서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이 합법/불법 여부를 단정적으로 결론내릴 수 없다. F. (만장일치로) 엄격하고 실효적인 국제적인 통제 아래서 전면적으로 핵무장해제로 가는 협상을 신의성실에 따라 추진하고 종결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 이 결정에 대한 간결한 정리는 http://en.wikipedia.org/wiki/Legality_of_the_Threat_or_Use_of_Nuclear_Weapons, 최종검색일: 2010-07-26.

22) open texture는 원래 법철학자 하트(H.L.A. Hart)의 개념이다. 그에 따르면 언어나 법적 명제는 의미가 완결되고 명료한 것이 아니라 성긴 직물처럼 불완전하다. 법적 명제를 사건에 적용하려고 하면, 법적 명제에 딱 들어맞는 전형적인 사례와 잘 부합하지 않는 주변적인 사례가 있다고 보았다. 하트는 후자의 경우에 법관의 재량을 인정하였다.

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무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인도성의 원칙은 유린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방한 해석은 특정한 무차별적인 무기의 개발, 사용, 수출에 관련된 국가들을 위한 논리이다. 국제인도법은 인도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방향에서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관한 마스터 규칙이 마르텐스²³⁾ 조항(Martens clause)이다. 마르텐스 조항은 <육전의 법과 관습에 관한 헤이그협약(1899)> 전문²⁴⁾에 등장한 국제인도법의 이해방식이자 운용원칙으로서, 조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도 문명민족들의 관행, 인도성의 원칙, 공적인 양심(public conscience)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⁵⁾ 마르텐스 조항은 국제관습법의 발전이나 새로운 인도주의 법원칙들의 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²⁶⁾

2) 확산탄의 불법성에 관한 결정들

확산탄금지조약이 채택되기 이전의 상황에서 확산탄에 관한 법적 결정과 관행들

23) 마르텐스(Fyodor Fyodorovich Martens 1845-1909)는 러시아의 국제법학자로서 헤이그 평화회의 당시에 러시아 외교관이었다. 그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Vladimir Pustogarov, "Fyodor Fyodorovich Martens(1845-1909) - a humanist of modern times",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no. 312(1996-06-30), p. 300-312.

24) "협약당사국들은, 전쟁법에 관한 보다 완전한 법전이 성립될 때까지 당사국들이 채택한 법전이 규율하지 않는 사안들에서 민간인과 전투요원이 문명민족들간의 확립된 관행, 인도주의의 법, 그리고 공공양심의 요청으로부터 귀결되는 국제법의 제원칙의 보호와 통제 아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Until a more complete code of the laws of war is issued,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hink it right to declare that in cases not included in the Regulations adopted by them, populations and belligerents remain under the protection and empire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s they result from the usages established between civilized nations, from the laws of humanity and the requirements of the public conscience)."

1907년 헤이그 제4협약에는 다음과 같이 약간 수정되어 나타난다. "Until a more complete code of the laws of war have been issued,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deem it expedient to declare that, in cases not included in the Regulations adopted by them, the inhabitants and the belligerents remain under the protection and the rule of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nations, as they result from the usages established among civilized peoples, from the laws of humanity, and the dictates of the public conscience."

25) 마르텐스 조항의 의미에 대해서는 Meron, Theodor, "The Martens Clause, Principles of Humanity, and Dictates of Public Conscienc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4(2000), 78쪽 이하.

26) Meron, 앞의 글, 80쪽.

은 확산탄 사용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확산탄이 무차별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피해를 야기하였을 때에 한정하여 사용한 국가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1) The Prosecutor v Martić(1996)²⁷⁾

마르티츠는 세르비아 정치인으로서 구유고전범재판소(ICTY)에 의해 전범으로 기소되었다. 그는 인종청소와 자그레브 폭격에 대한 주요책임자로 기소되었는데, 자그레브 폭격에서 바로 확산탄을 사용하였다. ICTY 사실심법원은 '확산탄 자체를 형식적으로 금지하는 국제인도법의 규정이 없다'고 밝히면서, 자그레브 폭격과 관련하여 확산탄을 탑재한 로켓의 사용은 피고인들이 민간인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전쟁범죄에 대한 범의의 증거라고 판단하였다. 그 로켓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적법한 군사적 목표물이 없는 지역에 투하되었다. 확산탄의 사용은 자그레브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으려는 명백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였다.²⁸⁾

(2) 나토의 확산탄사용에 대한 ICTY의 입장(2000)

유고내전에 개입한 나토가 코소보에 확산탄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다. 불발율이 30%에 이르고, 불발탄이 전투후에 야기하는 폐해 때문에 문제되었다. ICTY는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확산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특수한 조약규정은 없다. 물론 확산탄도 무기사용시 적용되는 일반원칙에 일치하여 사용해야 한다.” “나토의 확산탄사용이 그러한 일반원칙을 위반한 증거는 없다.” “확산탄이 법적인 관점에서 (대인지뢰금지협약으로 금지된) 대인지뢰와 동등하다는 일반적인 합의는 없다.”²⁹⁾

27) Trial Chamber I, Decision in Rule 61 Proceedings, 8 March 1996, 108 *ILR* 39(47).

28) 앞의 자료, 50-52.

29)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Final Report to the Prosecutor by the Committee Established to Review the NATO Bombing Campaign Against the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8 June 2000),

영국의 국방장관 훈(Geoff Hoon)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작전과 관련하여 비슷한 견해를 표명하였다. “확산탄은 특수한 군사적 위협—무장 차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민간주민을 겨냥해서 사용되지 않는다. (확산탄은) 국제협정에서 지뢰로 규정되지 않는다. 확산탄의 사용은 전적으로 합법적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영국상원의 바흐(Bach) 경도 유사한 견해를 표명하였다. “확산탄은 전적으로 합법적이다. 확산탄은 허용되며, 군사적 목적에 기여하며, 민간인이나 제한된 지역(confined areas)과도 무관하다. ... 우리는 국제법상의 의무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라크 기갑부대(armoured units)와 같은 정당한 군사적 목표물에 대하여 확산탄을 사용하였다.”³⁰⁾

(3) Physicians for Human Rights v O.C. Southern Command(2003)³¹⁾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지구에서 철제다트탄(flechette shell)³²⁾을 사용하였다.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철제다트탄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이스라엘 대법원에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 다트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의미있는 국제적인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였으며, 재래식무기협약(CCW)도 철제다트탄과 같은 자탄을 포함하는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철제다트탄의 사용이 전쟁법에 의하여 금지된다는 상고인의 주장은 옳지 않으며, 따라서 수용할 수 없다.”

법원은 철제다트탄이나 유사한 무기들의 사용이 민간인들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인정하였지만, 이러한 위험을 상쇄시킬만한 군사적 필요성이 있으며, 이스라엘 군대도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무기사용에 관한 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법원은 금지하는 국제관습법이나 조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철제다트탄의 사용은 합법적이며, 단지 무차별적으로 사용되는 때에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Reports and Other Documents Vol. 39(2000), 1264쪽.

30) Turns, 앞의 글, 216쪽 이하.

31) Physicians for Human Rights v O.C. Southern Command(HCJ 8990/02, 27 April 2003)

32) 무수한 강철 다트(자탄)로 구성된 이 무기는 몇 100평방 미터의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 제1차세계대전에서 강철제 다트무기는 처음 사용되었다.

는 불법적이라는 일반원칙을 확인하였다.

(4) 에리트리아-이디오피아 위원회의 결정(2004)

국경문제로 1998년에서 2000년까지 에리트리아와 이디오피아 양국간에 전쟁이 일어났다. 아프리카 최빈국임에도 불구하고 전쟁비용으로 수억달러를 지냈다. 전쟁은 에리트리아의 불법적인 국경 침범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책임은 에리트리아에게 있었다.³³⁾ 에리트리아는 이디오피아 공군의 주력이 머무는 메켈레 공항을 폭격하면서 공항 인근지역의 학교와 민간주거지역을 확산탄으로 공격함으로써 민간인과 학생들의 인명을 대량으로 살상하였다. 전후(戰後) 처리를 위하여 발족한 에리트리아-이디오피아 전후배상위원회(Eritrea-Ethiopia Claims Commission)는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57조상의 공격시에 민간인 보호를 위한 특별한 예방조치가 취해야 한다는 원칙을 인용하며 에리트리아에게 확산탄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³⁴⁾

(5) 요약

지금까지의 결정들을 고려하면 확산탄의 사용행위로부터 곧바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없으며, 확산탄을 특정한 방식으로, 즉 무차별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하였다. 또한 지뢰금지협약과 같이 특정한 무기를 명시적으로 불법화하는 조약규정이 없는 한 특정한 무기의 사용행위를 불법으로 보지 않는 것이 주요한 흐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과 결정들은 본질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본다. ‘확산탄금지협약’이 성립하기 이전의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사국뿐만 아니라 비당사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확산탄금지협약은 확산탄을 불법화시킨 국

33) Eritrea broke law in border war, <http://news.bbc.co.uk/2/hi/africa/4548754.stm>, 최종검색일 2010-7-16

34) Wiebe, 앞의 글, 903쪽 이하.

제사회의 중요한 행동이고, 이는 확산탄 사용을 동시에 불법적인 것으로 만드는 계기이다. 비록 금지협약은 협약국에게만 효력을 미치지만 금지협약이 국제관습법의 징표로서, 인도법 원칙의 구체화로서 인정될 수 있다. 국제관습법과 관련해서 확산탄협약의 해석과 운용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뢰금지협약을 고려해야 한다. 지뢰사용 자체를 국제관습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는 실정이지만,³⁵⁾ 지뢰사용금지규범이나 대인지뢰피해자지원규범은 국제관습법으로 부상중이라고 볼 수 있다.³⁶⁾ 따라서 ‘대인지뢰금지협약’ 이후에 지뢰사용금지에 관한 규범들이 국제관습법으로 강화되어 가는 과정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대인지뢰를 비당사국이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관한 국제관습법은 확산탄의 미래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3. 확산탄금지협약의 성립과정

1997년 대인지뢰금지협약을 추진하게 된 동력은 공격행위중의 피해뿐만 아니라 공격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뢰가 민간인에 대해 야기하는 피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었다. 확산탄 문제도 같은 관심에서 출발한다. 산포된 자탄들의 상당량은 지상에서 폭발하지 않고 방치되다가 다시 지속적으로 피해를 야기하였다. 때로는 밝은 색 계통의 폭탄들이 위험을 경고하지 않고 오히려 장난감이나 부활절용 달걀을 연상시켜 어린이들을 유혹하였다. 인권활동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공중투하

35) <국제관습인도법>은 대인지뢰와 관련해서 세 가지 관습법을 확인하고 있다.

규칙 81: 지뢰를 사용할 때에는 무차별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수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규칙 82: 지뢰를 사용하는 분쟁당사자는 가급적 지뢰설치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규칙 83: 적대행위가 종료된 때에는 지뢰를 사용한 분쟁의 당사자는 지뢰를 제거하고, 기타 민간인에게 해가 없도록 하고, 지뢰 제거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Henckaerts, Jean-Marie & Doswald-Beck, 앞의 책, 280쪽 이하.

36) Susan Benesch, Glenn McGrory, Cristina Rodriguez & Robert Sloane, “Emergence of a New Customary Norm,” *Landmine Munition and Cluster Monitor*, http://www.the-monitor.org/index.php/publications/display?url=lm/1999/appendices/custom_law.html(최종검색일: 2010-07-23); Rutherford, Ken, “State Legal Obligations to Landmine Victim Assistance”, *U.C. Davis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Vol. 7(2001), 41쪽 이하.

때에 폭발하지 않은 자탄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의 4분의 1은 전쟁이 끝난 후 불발탄을 가지고 놀던 아동들이었다고 한다.³⁷⁾ 2006년 레바논 전쟁은 확산탄 금지운동의 계기가 되었다.³⁸⁾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 100만발 이상의 확산탄을 퍼부었으며, 이스라엘이 투하한 확산탄의 자탄들의 40퍼센트가 폭발하지 않았다고 유엔은 추산하였다.³⁹⁾

확산탄금지협약이 성립하는 과정은 전반적으로 대인지뢰금지협약이 성안된 과정과 유사하다. 확산탄금지문제도 처음에는 재래식무기협약(The Convention on Conventional Weapons CCW)의 구도 안에서 시작되었다. 원래 재래식무기협약은 일정한 유형의 무기로부터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협약은 소이탄, 지뢰, 부비트랩, 산탄무기를 규제하였다.⁴⁰⁾ 협약은 나아가 전쟁 잔류폭발물에 관한 제5의정서(Protocol V on Explosive Remnants of War)를 추가하였다. 제5의정서는 불발된 자탄의 제거를 규정하였지만, 무력충돌시에 확산탄의 사용을 규제하지는 않는다. 이에 확산탄금지를 주창하는 국가들은 2006년 11월에 확산탄에 관한 제6의정서를 재래식무기협약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재래식무기협약은 어떠한 제안에 대하여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당사국간의 협상전권위임(negotiating mandate)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이 확산탄에 대한 협상개시를 거부하였고, 전권위임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회의도중에 도달한 유일한 합의는 확산탄에 관한 의정서의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2007년 6월에

37) "Britain Joins a Draft Treaty on Cluster Munitions ", *The New York Times*, 2008-05-29 <http://www.nytimes.com/2008/05/29/world/europe/29cluster.html?em&ex=1212206400&en=0e28528fd0c65072&ei=5087%0A>, <최종검색일: 2010-7-13>

38) 도허티는 무기조약의 선행조건으로 '인도적 피해실태의 문서화', '규제에 대한 공적 관심의 확산', '해당무기의 군사적 유용성의 저하'를 꼽고 있다. Docherty, Bonnie, "The Time is Now: A Historical Argument for a Cluster Munitions Conventions", *Harvard Human Rights Law Journal* Vol. 20(2007), 5쪽 이하.

39) <http://www.haaretz.com/news/idf-commander-we-fired-more-than-a-million-cluster-bombs-in-lebanon-1.197099>, <최종검색일: 2010-7-13>

40) 재래무기협약(CCW)에는 5개의 의정서들이 존재한다.

- Protocol I on weapons with non-detectable fragments
- Protocol II on landmines, booby traps
- Protocol III on incendiary weapons
- Protocol IV on blinding laser weapons
- Protocol V on explosive remnants of war

전문가그룹을 소집하자는 합의였다.

완만한 진행과 러시아, 중국, 미국의 방해공작에 낙담한 노르웨이가 2006년 11월에 협약 틀 바깥에서 확산탄금지를 향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이를 오슬로 프로세스(Oslo Process)라고 한다. 이는 과거에 협약(CCW)의 틀을 벗어나 대인지뢰금지협약을 성사시킨 캐나다의 오타와 프로세스(Ottawa Process)와 유사한 것이다. 미국은 2007년 6월에 반대를 철회하였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입장을 고수하였다. 오슬로에서 46개국의 인권활동가들은 확산탄금지협약을 추진하려는 오슬로 선언을 발표하였다.⁴¹⁾ 오슬로 프로세스는 “2008년까지 민간인에게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는 확산탄의 생산과 비축을 금지하고, 생존자들에 대한 배려와 회복 그리고 오염지역의 제거를 위한 적절한 규정을 포함하는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국제조약을 만들자”고 결의하였다. 오슬로 프로세스는 리마(Lima), 비엔나(Vienna) 등에서 모임을 지속하였다.⁴²⁾ 2008년 2월에는 79개국이 그 협약에 포함될 원칙들을 설명하는 웰링턴 선언(Wellington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⁴³⁾ 107개국의 대표들은 더블린에서 2008년 5월 10일간의 회의 끝에 조약의 최종안에 합의하였다. 조약의 텍스트는 107개국에 의해 2008년 5월 30일에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107개국에는 확산탄을 사용한 14개국 중에서 7개국 그리고 확산탄을 생산하는 34개국 중에서 17개국이 참여하였다. 상당량의 확산탄을 생산하고 비축하는 다수의 국가들, 중국, 러시아, 미국,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브라질 등이 이 조약에 반대하였다. 미국은 확산탄 사용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을 수긍하였지만, 재래식무기협약상의 포럼이 확산탄에 관한 적절한 논의 무대라고 주장하였다. 나중에는 미국은 기술적 수준이 뛰어난 확산탄(스마트 탄)을 개발하게 되면 확산탄의 문제도 소멸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⁴⁴⁾

41)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7/02/23/AR2007022300492.html>, <최종검색일: 2010-7-13>

42) 오슬로 프로세스는 2007년 5월 리마, 12월 비엔나 이외에도, 2007년 3월 15일 프놈펜(캄보디아), 2007년 4월 18-20일 몽트뢰(스위스), 2007년 9월 4-5일 산호세(코스타리카), 2007년 10월 3-4일 벨그라드(세르비아), 2007년 10월 30일 브뤼셀(벨기에), 2008년 2월 18-22일 웰링턴(뉴질랜드)에서 회의를 지속하였다. <http://www.stopclustermunitions.org/calendar/><최종검색일: 2010-07-23>

43) Declaration of the Wellington conference on cluster munitions, http://www.clusterconvention.org/pages/pages_vi/vic_oslowellington.html, 최종검색일: 2010-7-13

더블린 회의에 앞서 영국은 조약의 성패를 결정할 주요한 국가가 되었다. 회의의 종결 직전에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극적으로 입장을 전환하여 자국의 확산탄을 전량 폐기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미국의 집중적인 로비와 영국정부 인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브라운은 금지협약을 지지하였다. 확산탄금지협약은 2008년 12월 3일에 오슬로 시청의 식당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다. 의식의 마지막까지 94개국이 서명을 하였다. 아일랜드, 홀리 시, 시에라 리온, 노르웨이는 비준서도 이미 제출하였다.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에서 21개국, 나토 26개국에서 18개국이 서명하였다. 서명국중에서 라오스⁴⁵⁾와 레바논⁴⁶⁾은 확산탄의 피해를 경험한 국가들이다. 그런 점에서 확산탄은 미래적 금지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용결과를 제거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제정의(global justice)의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4. 협약의 의의와 정당성

확산탄금지협약은 확산탄의 피해실상과 피해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룸으로써 국제적 정의에 접근하고 있다. 협약이 확산탄의 최대보유국과 사용국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국제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협약의 성립과정에서 비정부기구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점에서 대원지뢰금지협약과 같이 ‘국제적 거버넌스’의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확산탄금지협

44) “United States Opposes Ban On Cluster Munitions, Supports Alternative CCW Negotiation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2(2008), 889쪽 이하. 미국은 확산탄이 자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필수적이며, 확산탄을 국제인도법의 척도안에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특히 전투중에 이동중인 표적, 비행선, 중무장한 트럭, 탱크, 부대, 숲속에 가려져 있는 목표물,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목표물에 대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McGrath, Rae, *Cluster Bombs: The military Effectiveness and Impact on Civilians of cluster Munitions*(2000), http://www.landmineaction.org/resources/Cluster_Bombs.pdf.

45) Kevin Bryant, Cluster Munitions and their Submunitions--A Personal View, Cluster Munitions, in U.N. Inst. for Disarmament Research, 4 Disarmament Forum 45-49 (2006), <http://www.unidir.org/pdf/articles/pdf-art2533.pdf> (최종검색일 2010-7-16).

46) Stewart, James G.,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on Lebanon”,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 5(2007), 1039쪽 이하.

약은 국제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⁴⁷⁾ 첫째로, 협약은 국제인도법의 핵심원리인 구별(distinction)의 원칙과 비례(proportionality)의 원칙을 발전시켰다. 둘째로, 확산탄을 사용하는 국가들에게 강력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제인도법을 강화하였다. 셋째로,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연관성을 보강하였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정립과정인 오슬로 프로세스는 조약 협상과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1) 국제인도법의 핵심원칙의 강화

국제인도법은 국제사회가 특정 무기의 국제인도법 원칙에 대한 위반여부와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행의 방식을 규정할 때 인도법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다. 협약은 확산탄이 국제인도법 원칙들의 핵심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사정을 밝힘으로써 국제인도법분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확산탄금지협약은 국제인도법의 핵심원칙인 구별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강력한 기준을 전개하였으며, 확산탄이 어떻게 이러한 원칙들을 침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무력충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는 충돌의 당사자들은 군사적 목표물과 민간인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다.⁴⁸⁾ 확산탄의 사용은 공격중이거나 공격후, 특히 민간인 거주지역 또는 근접지역에서 군사적 목표물과 민간인 또는 민간시설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확산탄은 공격후에도 잔류하여 잔류지역에 접근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구별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비례성의 원칙은 민간에 대하여 예상된 피해가 공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득을 능가하는 때에는 공격을 금지한다. 이 원칙도 확산탄의 금지와 관련있다. 확산탄은 대부분의 경우에 군사적 목표물보다 민간인에 대하여 더 큰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증명되었으며, 거주지역에서 사용되는 경우, 특히 장기적인 효과까지 계산에 넣는 경우에는 확산탄은 비례성을 상실한 것

47) 이하의 논의는 다음의 글에서 가져온 것이다. Corsi, Jessica, "Towards Peace Through Legal Innovation: The Process and the Promise of the 2008 Cluster Munitions Convention", *Harvard Human Rights Law Journal* Vol. 22, 2009, 150쪽 이하.

48) Henckaerts, & Doswald-Beck, 앞의 책, 3쪽 이하.

으로 추정된다. 비례성의 평가에서 확산탄의 후작용을 주목함으로써 확산탄금지협약은 비례성의 원칙을 강화하고 명료화하고, 충돌당사자들로 하여금 무기의 장기적인 효과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사고를 발전시켰다.

2)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인도법의 발전

확산탄금지협약의 새로운 사항은 확산탄을 사용한 국가에 대해 협약이 부과한 책임이다. 협약 제4조 4항은 협약이 발효하기 전에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관할지역에서 사용했거나 방치했던 잔류확산탄에 대해서도 이를 제거할 책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CCW 잔류폭발물에 관한 제5의정서>는 폭탄을 사용했거나 방치했던 국가에 대하여 공격후 무기제거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부과하는데 비하여, 확산탄금지협약은 협약의 효력발생 이전에 사용하였거나 방치하였던 확산탄을 당사국에게 제거하도록 한다는 점이 특색이다. 이 규정은 확산탄을 잔류시키는 데에 책임이 있는 국가를 직접적으로 끌어들이므로써 피해지역의 관할국가가 전통적으로 부담해왔던 제거책임을 완화시킨다. 협약은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와 같은 나라에게 희망을 준다. 이러한 나라들에 대한 확산탄 공격은 확산탄을 제거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발전과 역량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다. 협약의 규정은 과거의 사용과 현재의 위협을 현재 사용국가의 제거의무와 연결시킴으로써 국가들이 국제인도법상의 합법성을 평가할 때 특정 무기의 예측가능한 그리고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게 하였다. 협약이 제거의무와 피해자 지원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종전(終戰)의 법(jus post bellum)으로서 성격도 두드러진다.

협약 제4조 제4항 (b)는 “사용한 확산탄의 유형과 양, 확산탄공격의 정확한 위치 그리고 잔류확산탄이 소재한 것으로 알려진 장소”를 포함하여 잔류물의 완전하고 시의적절한 제거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당사국들이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사용국가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확산탄 공격 후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제거에 지장을 주는 정

보격차를 규율하고 있다. 제4조 제4항 (b)의 정보공유요소는 CCW 제5의정서의 부속서와 같은 현행국제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규정은 (폭탄사용)기록부를 작성하는 것과 피해지역의 관할국가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최상의 관행임을 시사하고 있다. 정보공유제도는 협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사용되었거나 방치되었던 확산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확산탄금지협약은 수십년 묵은 문제들에 대하여 실효적인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

3)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연계성의 강화

확산탄금지협약이 국제법규범을 강화시키는 또 다른 방식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통합하는 측면이다. 학자들은 국제인도법(Int'l Humanitarian Law)과 국제인권법(Int'l Human Rights Law)이 단일한 법체계로 통합된다는 점을 주장해왔는데, 확산탄금지협약은 바로 이러한 사고를 밀받침한다. 확산탄금지협약은 인권법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다. 특히 협약전문은 “모든 확산탄 피해자들의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확보하는 것”이나 “협약의 당사국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모든 인권과 근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확보하고 촉진시키는 것을 요구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언급하고 있다. 전문은 또한 “확산탄 피해자들에 대한 연령 및 성을 반영하는(gender-sensitive) 지원을 제공할 필요, 그리고 취약집단의 특수한 수요를 다룰 필요”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아동권, 젠더권리, 취약집단의 권리와 같은 인권의 하위영역을 통합하고 있다.

4) 미래지향적 조약협상모델의 제시

확산탄협약의 채택과정은 조약성립방식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다. 기존의 조약들 안에서 다자간의 협상이라는 전통적인 방법이 충실한 협약을 만들어내지 못하자, 뜻을 같이 하는 정부들, 국제기구들, 시민사회가 오슬로 프로세스를 꾸려서 신속하게 인상적인 협정을 만들 수 있었다. 확산탄협약의 성공은 대인지뢰협약이

1회적 성공에 그칠 것이라는 생각을 극복하도록 하였다. 오히려 제때에 포괄적인 조약을 발전시키려는 공동목적을 향하여 노력하는 국가와 기구들간의 헌신적 협력을 통해서 국가와 시민사회는 교착상태를 보다 폭넓은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대인지뢰금지협약과 같은 대단한 성과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을 확산시켰다.

5. 확산탄금지협약의 내용

1) 일반적인 의무(제1조)

당사국은 확산탄을 사용, 개발, 생산, 비축, 보유, 양도해서는 안 되며, 협약이 당사국에게 금지한 사항에 관여하는 것을 지원, 장려, 유도해서는 안 된다.

2) 정의(제2조)

‘확산탄 피해자(cluster munition victims)’

확산탄의 사용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였거나 신체적 또는 심리적 손해, 경제적 손상, 사회적 주변화 또는 권리실현의 실질적 방해를 겪은 모든 사람이다. 피해자에는 직접적으로 확산탄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가족원들과 공동체를 포함한다.

‘확산탄(cluster munition)’

각각 20kg 미만의 폭발성 자탄(submunition)을 산포하도록 고안된 재래식 폭탄과 자탄을 포함한다. 그러나 다음의 폭탄은 확산탄에 포함되지 않는다.

(a) 화염이나 연기, 조명탄이나 레이더탐지방해금속편 등을 산포하도록 고안된 모탄이나 자탄 또는 오로지 방공의 목적으로 고안된 폭탄

- (b) 전기 또는 전자적 효과를 발생하도록 고안된 모탄이나 자탄
- (c) 무차별적 효과와 불발탄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모두 구비한 폭탄
 - (i) 모탄 속의 자탄이 10개 미만이고,
 - (ii) 각 자탄의 무게가 4kg이상이고,
 - (iii) 각 자탄이 1개의 목표물만을 추적하도록 고안되어 있으며,
 - (iv) 각 자탄이 전자적인 자가폭파장치를 장착하고 있으며,
 - (v) 각 자탄이 자가무능화장치를 장착하고 있을 것.

3) 무기의 파괴 (제3조)

협약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군사작전을 위하여 보유하는 무기중에서 확산탄 전량을 분리하고, 파괴를 위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당사국에 대해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지 8년 안에 모든 확산탄을 폐기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공중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괴방법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잔류확산탄 제거와 파괴 (제4조)

협정당사국은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지 10년 안에 오염된 땅의 확산탄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음 당사국회의(Meeting of States Parties)에 당사국은 이행선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잔류확산탄이 야기하는 위협을 조사하고, 평가하고, 보고함으로써 관할영역내에 확산탄 오염지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당사국은 확산탄 제거계획을 매년 보고할 의무를 진다. 확산탄 오염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확산탄에 관한 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위험방지교육을 시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당사국은 확산탄을 제거하는 활동을 할 때 국제지뢰행동기준(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등 국제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확산탄 사용국은 언제 어디서 확산탄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5) 피해자 지원 (제5조)

당사국은 관할영역내의 확산탄 피해자들과 관련하여 국제인도/인권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law)에 일치하여 연령과 성별을 반영하는 의료보장(medical care), 재활(rehabilitation), 심리적 지원을 포함한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확보해야 한다. 당사국은 확산탄피해자들에 관한 신뢰할만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당사국은 확산탄 피해자들의 필요를 평가하고, 필요한 국내법과 정책을 개발, 이행, 시행하고, 국가적 계획과 예산을 개발하고, 국내적 국제적 재원을 가동하는 조치를 취하고, 확산탄피해자들 상호간에 그리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관계에서도 평등하게 취급하고, 확산탄 피해자들 및 그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며, 피해자 지원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부안에 초점기관(focal point)을 지정하고, 의료보장, 재활, 사회적 지원, 사회경제적 통합의 영역을 포괄하는 적절한 지침과 관행을 구체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국제협력과 지원 (제6조)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지원을 요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 역량을 갖춘 당사국은 이 협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확산탄의 피해를 당한 국가에게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지원은 유엔체제, 국제·권역·국내 조직이나 기관, 비정부 조직이나 기구 또는 상호주의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당사국은 이 협의 이행에 관하여 장비 및 과학기술적 정보의 가능한 한 완전한 교류를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거기에 참여할 권리

를 보유한다. 당사국은 인도적 목적을 위한 제거활동, 여타 장비, 관련된 기술적 정보의 제공과 인수에 대하여 부당한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 역량을 갖춘 당사국은 잔류확산탄, 비축확산탄의 제거와 파괴를 위한 지원, 확산탄 제거 기술과 수단에 관한 정보, 확산탄 제거와 파괴, 그 활동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명단, 전문가기구 또는 국가적 창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역량을 갖춘 당사국은 제5조의 피해자지원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무를 부담한다. 그러한 협력은 유엔 체제, 국제·권역·국내 조직이나 기관, 국제적십자사, 국내적십자사, 적신월회, 국제적신월회, 비정부 조직이나 기구, 국제적십자사, 국 또는 상호주의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역량을 갖춘 국가는 확산탄 피해국가에서 확산탄 사용의 결과로서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복구에 기여하는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역량을 갖춘 국가는 이 조의 지원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기금(trust funds)에 기여해야 한다.

7) 투명성 조치 (제7조)

당사국은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180일 이내에 유엔사무총장에게 이 협약의 이행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진다. 보고의무 사항은 국내이행조치(제9조), 자탄의 유형, 수량, 제품번호를 포함하여 확산탄의 총계, 유형별 확산탄의 기술적 특성, 확산탄 생산시설의 용도변경계획의 진행상황, 제3조에 따른 확산탄 파괴 계획의 진행상황, 제3조상 파괴되는 확산탄의 유형과 수량, 확산탄의 비축현황, 확산탄 오염 지역의 규모와 위치, 제4조에 따른 잔류확산탄의 제거와 파괴의 현황, 확산탄 오염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에 대한 위험예방교육과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경고에 관한 조치, 이 조항에 규정된 조치를 이행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명칭과 접촉창구, 협약 제3조, 제4조, 제5조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확보하고 있는 재정적 기타 국가적 재원의 규모, 제6조에서 규정한 국제협력과 지원의 규모, 유형, 지원국가.

보고서는 매년 4월 30일 이전에 유엔사무총장에 제출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접수

한 모든 보고서를 당사국들에게 송부해야 한다.

8) 다른 당사국에 대한 협약이행 실태의 해명요구 (제8조)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게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협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때에는 유엔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해명요청서(a request for Clarification)를 다른 당사국에 보낸다. 관련국은 28일 이내에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답변서를 제공해야 한다. 해명을 요청한 국가가 규정된 기간내에 답변서를 받지 못하거나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간주한 때에는 이 문제를 유엔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다음 협약당사국회의(The next Meeting of States Parties)에 회부할 수 있다. 당사국회의가 계속중인 때에는 모든 당사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그의 선량한 직책을 활용하여 요청받은 해명서를 제출하게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당사국회의는 우선 회부된 문제에 대하여 관련당사국이 제출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문제를 더 고려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당사국회의는 관련당사국에게 해명을 위해 방법과 수단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행실태의 해명을 위하여 일반적인 절차(general procedures)나 특별한 장치(specific mechanisms)를 채택할 수 있다.

9) 국가적 이행조치 (제9조)

협약상 당사국에 대해 금지된 활동을 방지하고 억제하는 형사적 재제를 포함해서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적, 행정적, 여타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 당사국회의 (제11조)

협약의 작동과 실태, 협약규정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로부터 발생하는 문제, 국제적 협력과 지원, 잔류확산탄의 제거를 위한 공학기술의 개발, 당사국의 소위원회

(제8조와 제9조), 당사국 소위원회(제3조와 제4조)를 포함하여 협약의 적용이나 이행과 관련한 문제를 고려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국회의(Meeting of States Parties)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최초회의는 이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1년 이내에 유엔 사무총장이 주재한다. 후속회의는 제1차 재검토회의(Review Conference) 때까지 매년 유엔 사무총장이 주재한다.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 유엔, 기타 국제기구나 단체, 권역기구,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적신월회협회, 기타 비정부기구는 절차규칙에 따라 참관인으로 초청될 수 있다.

11) 재검토회의 (제12조)

재검토회의(Review Conference)는 유엔 사무총장이 조약의 발효 이후 5년마다 평가회의를 주재한다. 평가회의는 협약의 운영과 실태를 점검하고, 차회 당사국회의의 필요성과 간격을 반영하고, 제3조와 제4조의 당사국의 소위원회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 유엔, 기타 국제기구나 단체, 권역기구,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적신월회협회, 기타 비정부기구는 절차규칙에 따라 참관인으로 초청될 수 있다.

12) 유보 (제19조)

이 협약은 유보를 허용하지 않는다.

13) 비당사국과의 관계 (제21조)

당사국은 조약의 의무를 상대국에게 알려야 하고, 상대국이 확산탄의 사용을 단념토록 독려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당사국, 그 군대나 국민은 이 협약의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에게는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는 비당사

국과의 군사협력과 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 비당사국과의 협력규정은 당사국에게 확산탄의 개발, 생산, 여타 취득, 확산탄의 비축, 양도, 사용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당사국의 영토안에서 확산탄이 되는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확산탄의 사용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6. 금지협약의 문제점과 한국의 현실

1) 협약의 문제점

첫째로, 대표적 확산탄 보유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협약의 실질적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지적된다. 세 국가의 확산탄 보유량은 약 10억발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최대의 확산탄 보유국이자 사용국인 미국은 7억 5천만발 이상의 확산탄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무기규제에 관한 지속적이고 의미있는 협정은 논리적으로 무기의 주요생산자와 공급자들을 참여와 동의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역사가 항상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진행하지는 않는다. 1995년 CCW는 대인지뢰규제에 관한 협약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1996년에 지뢰에 대하여 조건부금지를 선호하는 국가와 전면적인 금지를 옹호하는 국가들이 대립함으로써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국가들이 CCW의 틀로부터 이탈하였다.⁴⁹⁾ 거기에 국제적십자위원회, 적십자 및 적신월회의 국제협의회, 유엔, 대인지뢰금지국제캠페인(NGO) 등이 참여하여 대인지뢰금지협약을 기초하였다. 일명 ‘오타와 프로세스(Ottawa Process)’라 불리는 이 절차는 미국, 러시아, 중국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조약의 시행이후로 4천 만개의 이상 대인지뢰가 제거되었으며, 무기거래도 중단되었다. 더구나 미국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 많은 지뢰제거비용(12억달

49) Wiebe, Virgil, “Footprints of Death: Cluster Bombs as a Indiscriminate Weapon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2(2001), 159쪽.

리)을 지불하였다.⁵⁰⁾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의 지적처럼 조약이 만들어지는 경로와 상관없이 특정한 무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은 특정무기의 생산, 거래, 이용에 대하여 ‘딱지효과’를 낳음으로써 분명히 억제작용을 수행한다.

둘째로, 확산탄금지협약은 사실상 확산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못하였다. 일정 요건과 기술적 장치를 구비한 경우, 이른바 스마트 탄을 금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살상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하는 수준의 확산탄을 만들어낸다면 확산탄을 ‘무차별적 무기(indiscriminate weapons)’로서 인도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의 확산탄은 그런 정밀타격능력을 보유하지 않았다. 또한 불발율도 이상적인 실험조건에서 계산된 것이다. 현실의 전투상황과 최적의 실험조건은 다를 것이다. 기술적 완벽성에 관한 요구조건은 확산탄 생산국이나 보유국에 대한 회피장치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대안적 무기를 찾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⁵¹⁾

셋째로, 확산탄금지협약은 협약당사국과 비당사국 간의 군사적 협력을 허용하고 있다. 비당사국이 당사국과 공동군사작전에서 확산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는 확산탄금지조약의 일부를 허물어뜨리는 회피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확산탄 최대보유국으로서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이 규정은 취지상 당사국에게 금지된 활동을 제3자가 하는 것을 지원, 장려, 유도하지 못하게 한 협약규정(제1조 (1) C) 그리고 유보조항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협약규정(제19조)과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삭제되어야 한다.

2) 한국의 과제

확산탄금지협약에 대해서 한국의 국방부와 외교부는 “특수한 군사 안보적 상황

50) Cluster Bombs, *N.Y. Times*, 2008-6-1 <http://www.nytimes.com/2008/06/01/opinion/01sun1.html>.

51) 미국의회는 불발율이 1퍼센트를 넘는 확산탄(dumb cluster munition)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646). <http://www.cdi.org/clusters/#122607>, 최종검색일: 2010-07-23

을 고려해 확산탄금지협약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 정부 방침”임을 거듭 확인하였다. 확산탄금지협약은 전쟁무기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확인인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절한 답인지는 의문이다. 아마도 대인지뢰금지협약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확산탄을 생산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7개국이며, 특히 한국은 중국과 함께 아시아에서 확산탄 수출국이며, 미국 확산탄의 모든 종류를 수입하는 최대수입국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풍산과 한국화약이 확산탄을 생산하고 있다. ‘윤리투자’를 내걸고 있는 노르웨이의 연금펀드는 한국내 확산탄 생산기업인 풍산과 한화를 2006년 12월과 2008년 1월 각각 ‘투자금지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결단이나 기업의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확산탄의 생산과 수출을 중단시킬 방법은 없다. 그러나 확산탄을 불법무기 또는 무차별적인 무기로 규정한 확산탄금지협약은 우선 당사국을 구속한다. 확산탄금지협약상의 책무를 피하기 위해서는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확산탄사용금지 규칙이 국제사회에 일반적으로 효력을 지닌 규범, 즉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⁵²⁾ 협약이 막 출범했기 때문에 조약으로부터 관습법이 확립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을 염두에 들지 모르지만, 국제관습법이 성립하는데 시간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⁵³⁾

비록 한국군대가 확산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용금지규칙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확산탄의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확산탄 제거를 위한 기술지원과 협력, 확산탄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사회경제적 지원과 발전, 기금출연에 관한 의무 등을 당사국이 아니지만 사실상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확산탄으로 인한

52) Benesch(외), 앞의 글 참조.; 조약법의 관습법적 지위에 대한 고전적인 글로는 Meron, Theodor, The Geneva Conventions as Customary La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1(1987), 348쪽 이하.

53) 북해대륙붕사건(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1969)에서 ICJ가 취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Benesch, 앞의 글 참조.

피해가 계속되는 현실에서 확산탄 생산국으로서 한국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목에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중간영역에서 형성된 확산탄금지협약이 일종의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비당사국일지라도 실제로 전투수단으로서 확산탄을 사용하여 민간인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사용국은 확산탄 민간인 피해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사용금지에 관한 관습법보다 먼저 제거책임과 피해배상에 관한 관습법이 성립하리라고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주요한 무기중의 하나인 확산탄이 유사시 한국에서 대량으로 사용된다면 그 확산탄의 피해는 어느 일방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증오에는 증오로, 무기에는 무기로 맞서는 세력균형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불행과 파멸에 있어서의 평등이 눈에 선하다.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못지않게 국제사회가 불법화한 비인도적인 무기의 생산, 배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협력규정을 통해 우려되는 바와 같이 유사시 한반도에서 미군이 사용하게 될 금지무기 양과 질에 대해 정확한 확인과 통제가 필요하다. 전시작전권의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당연히 주목해야 한다. 국제법 준수노력이 한국정부 독자적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시작전권이 어디에 있다한들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세력들이 권좌에 있는 한, 불행과 파멸의 위협 앞에서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어 보인다. 결국 원론적으로 군사권력을 평화지향적으로 재구성하고, 그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확보하는 것만이 전쟁과 위기에 대한 적절한 해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군사법, 비상사태법, 전쟁법에 관한 전면적이고 민주적인 통제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참고: 무기협약의 목록 >

- 가입 당사국 수는 2008년 기준임 -

- 페테스부르크선언(Declaration Renouncing the Use, in Time of War, of Certain Explosive Projectiles, St. Petersburg, 1868, 금지, 당사국 20개국)
- 1899년 헤이그 기구폭탄 선언(Declaration (IV, 1) to Prohibit, for the Term of Five Years, the Launching of Projectiles and Explosives from Balloons, and Other Methods of Similar Nature, The Hague, 금지, 24개국)
- 1899헤이그 가스선언(Declaration (IV, 2) Concerning Asphyxiating Gases, The Hague, 1899, 금지, 31개국)
- 헤이그 덤뎀탄 선언(Declaration (IV, 3) Concerning Expanding Bullets, The Hague, 1899, 금지, 31개국)
- 1907 헤이그 기구 폭탄 선언(Declaration (XIV) Prohibiting the Discharge of Projectiles and Explosives from Balloons, The Hague, 1907, 금지, 20개국)
- 헤이그 촉발수뢰협약(Convention (VIII) Relative to the Laying of Automatic Submarine Contact Mines, The Hague, 1907, 규제, 27개국)
- 잠수함 및 가스협약(Treaty Relating to the Use of Submarines and Noxious Gases in Warfare, Washington, 1922, 규제와 금지, 10개국)
- 1925년 제네바의정서(Protocol for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Asphyxiating, Poisonous or Other Gases, and Bacteriological Methods of Warfare, Geneva, 1925, 금지, 134개국)
- 생물무기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London, Moscow, and Washington, 1972, 금지, 155개국)

- 재래식무기협약(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Geneva, 1980, 규제와 금지, 102개국)
- CCW 제1의정서(CCW Protocol on Non-Detectable Fragments, Geneva 1980, 금지, 100개국)
- CCW 제2의정서(CCW Protocol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Mines, Booby-Traps and Other Devices, Geneva, 1980, 규제, 89개국)
- CCW 제3의정서(Protocol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Incendiary Weapons, Geneva, 1980, 규제, 95개국)
- 화학무기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Paris 1993, 금지, 182개국)
- CCW 제4의정서(Protocol on Blinding Laser Weapons, Geneva, 1995, 금지, 85개국)
- CCW 제2의정서수정(CCW Amended Protocol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Mines, Booby-Traps and Other Devices, Geneva, 1996, 규제, 87개국)
- 지뢰금지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Personnel Mines and on Their Destruction, Ottawa, 1997, 금지, 153개국)
- CCW 제5의정서(Protocol on Explosive Remnants of War, Geneva, 2003, 규제, 31개국)

한국에서의 확산탄(집속탄) 문제와 전면 금지의 필요성

박석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활동가)

1. 들어가며

확산탄 또는 집속탄⁵⁴⁾ 금지협약(이하 확산탄금지협약으로 기술)이 오는 2010년 8월 1일, 국제조약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정식 발효되게 된다. 인류 인권 역사의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받는 이 협약은 1997년 체결된 대인지뢰금지조약과 더불어 강력한 무장해제조약으로 기능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⁵⁵⁾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한국이 ‘특수한 군사·안보적 상황’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확산탄의 폐기는 물론 금지협약에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본 토론문에서 필자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확산탄의 문제가 외국의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되었을 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공론화조차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현재 한반도는 세계 그 어느 곳보다도 확산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54) 이 무기의 영문 표기는 cluster bomb 또는 cluster munition이다. 직역을 하면 ‘다발폭탄’ 정도로 해석이 될 것 인데 다발폭탄 즉 집속탄(集束彈)이라는 표현이 이 폭탄의 성상(性狀)을 표현한 것이라면 확산탄(擴散彈)이라는 표현은 이 폭탄의 기능과 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속탄으로 많이 소개되었음에도 필자가 굳이 확산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폭탄의 모습보다 그 작용을 설명하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55) 1999년 3월 1일 65개국이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을 완료함으로써 발효되었으며, 2010년 현재 156개국이 서명하였다. 협약 덕분에 지구촌의 지뢰 피해는 감소하는 추세다. 협약 이전까지 매년 2만5,000명의 사상자를 냈으나 조약 체결 10년이 지난 2008년의 희생자는 5,197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다.

을 설명하고 그 전면 폐기와 금지 협약 가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2. 한국에서의 확산탄 문제

1) 한국의 확산탄

전 세계적으로 200여종의 확산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은 최대의 확산탄 보유국인 미국이 생산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확산탄을 수입하는 나라이며, 한화와 풍산 등의 군수기업들은 자체 생산과 수출까지 하고 있다. 관련하여 현재 한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확산탄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필자가 국방부에 공개질의와 정보공개청구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으나 국방부측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한사코 이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어서 기사화 된 각종 자료들과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의 자료들을 통해 국방부가 운용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한 확산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소개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확산탄 문제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듯하다.

① 155밀리 DP-ICM (Dual Purpose-Improved Conventional Munition, 이중목적개량고폭탄)

포에서 발사하는 곡사포 탄약으로 전차 및 전차 주위의 사람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확산탄이다. 이 유형으로 두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88개의 소폭탄이 내장된 K308모델과 49개의 소폭탄이 내장된 K310모델이 그것이다. K310 모델과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길이는 804,85(mm)이고 중량은 45kg~47kg이며 탱크 등 경(輕) 목표물을 파괴할 때는 그 관통력이 100mm이상, 사람 등 연(軟) 목표물을 살상할 경우에는 자탄 1발의 살상반경이 7m이상이다. 최대 사거리는 기존 곡사포에서 발사할 경우 28km, 신



형 자주포에서 발사할 경우에는 36km에 이르며 모(母)폭탄 1발의 최대 살상면적은 5,100 평방미터(1,540평)를 넘는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명칭에 'BB'라는 표기가 붙은 것은 자체 자폭장치가 장착된 것이라 하는데 '155밀리 B/B DP-ICM K310'의 경우 불발율은 2,8%에 이른다. 자폭장치가 장착된 경우에도 모폭탄 1발에 약 1.5발의 불발자탄이 나온다는 말이 된다. 특히 이 확산탄은 2006년 당시 이스라엘이 종전 72시간을 앞두고 레바논 민간인 지역에 대량 투하하면서 국제적 문제를 야기시켰던 탄과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폭탄 투하 후 불발탄에 의해 지속적으로 민간인이 희생되자 자신들이 사용한 확산탄은 불발율이 0,06%이며 자폭능력이 99%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진행된 유엔의 조사는 레바논 남부 전역에 불발탄이 도처에 널려있었다고 보고하였다.(400만발의 자탄

중 100만발이 불발탄으로 남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6년 11월) 확산탄 금지협약을 태동시킨 '오슬로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데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던 확산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풍산이 생산하고 있는데 올 해 (2010년) 국방예산에 721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주)풍산은 국내수요에 만족하지 않고 이 확산탄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 2004년 11월 파키스탄의 군수공장과 이 확산탄의 발사체 공동생산 계약을 맺고 공동 수출 마케팅을 벌이고 있으며 2008년 3월에는 류진 (주)풍산 회장과 파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파키스탄 군과 진행한 탄두이전식이 보도된 바 있다.

② 2,75” MPSM (Multy Purpose Sub Munition, 2.75인치 로켓 다목적 고폭탄두)



▲동종 모델인 미국의 HYDRA 70 체계 MPSM의 모습

코브라, 아파치 등 주로 공격용 헬기에 장착되어 발사되는 공대지 확산탄, 국방과학연구소의 발표를 보면 최근에는 고속항공기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며 2006년 (주)한화가 독자 개발한 70mm MLRS(다연장로켓시스템)에도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 9발의 자탄을 내장하고 주로는 대전차과괴용이나 인마살상역시 가능토록 제작되었으며 올 해(2010년) 87억의 구매비용이 국방비에 포함되었다. 미국의 HYDRA 70체계의 로켓탄과 유사하며 2003년 이라크 전쟁때 미군이 투하한 18,000발의 확산탄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알려졌으며 평균 불발율은 6%정도이다. (주)한화 역시 (주)풍산과 마찬가지로 확산탄의 국내 수요에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주)풍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08년 3월 파키스탄에 M261다목적 로켓탄을 수출한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 확산탄을 소개하기에 앞서 한가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제시되고 있는 불발율의 부정확성과 관련한 것이다. 확산탄의 불발율에 대한 일반적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확산탄이 투하되는 지역의 지형이 확산탄의 불발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도시와 같이 단단한 콘크리트 등으로 지면이 덮힌 곳에서 확산탄의 불발율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막이나 밀림과 같이 확산탄이 충돌하는 지면이 견고하지 못하거나 지면에까지 도달하는데 방해

요소가 많은 경우라면 불발율은 현저히 높아진다. 그런 점에서 확산탄을 ‘예측할 수 없으며, 통제불가능한 무기’라 칭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라 보여진다.



▲ 투하된 확산자탄이 나뭇가지에 걸린 모습

③ MLRS (Multiflunch Rocket System, 다연장(多宴裝)로켓 발사 시스템)

앞서 살펴 본 확산탄들이 우리나라에서 운용되는 확산탄 무기체계의 서론이라면 MLRS는 본론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MLRS는 12발의 로켓탄을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는 무기인데 한국이 이 무기체계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북한의 장사정포 문제가 확산되자 당시 한미연합사는 유사시 이를 일시에 제압할 필요를 제기하며 대화력전⁵⁶⁾ 수행본부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북한에 대한 대화력전을 수행하는데 동원되는 대표적인 무기체계가 바로 MLRS이다. 초기의

56) 대화력전 계획 :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는데 정찰위성, U2기, 무인정찰기(UAV) 등의 정찰장비를 통해 북한군의 포병에 이상 징후 확인되면 MLRS나 K9자주포 등으로 이를 격파하는 공세적 대화력전과 북한이 포를 먼저 사격했을 때 그 궤적을 대포병레이더인 TPQ36,37로 역추적해 포의 위치를 탐지 후 타격하는 대응적 대화력전이 그것이다.



▲ MLRS 모습

대화력전 수행임무는 주한미군의 미2사단이 담당했었는데 1990년대 후반 미국은 이 임무를 한국에게 넘기기로 결정하고 이를 한국에 강요하기 시작한다. 이에 전력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판단에 국방부는 급하게 MLRS 무기체계의 구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런 이유로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며 전량을 미국으로부터 직도입⁵⁷⁾하게 된다.

당시 도입된 M270A1모델⁵⁸⁾의 경우 12발을 모두 발사하는데 60초가 소요되며 기본형 로켓탄인 M26의 경우 총 644발의 자탄을 내장하고 있다. 이 자탄은 수류탄과 비슷한 크기이지만 폭발력이 강력해 100mm이상의 철갑을 관통할 수 있으며 사람과 전차를 모두 공격할 수 있는 이중목적고폭탄(DP-ICM)의 한 종류이다. 다연장 로켓탄 한발은 축구장 3개 면적을 일시에 초토화시킬수 있으며 MLRS 1개 포대는 3문의 MLRS 발사체를 구비하는데 MLRS 1개 포대가 일제 사격을 할 경우 1분 안에 23,184발의 자탄을 목표지역에 쏟아 부을 수 있다. 1991년 결

57) 대화력전 임무 수행을 위해 도입되기 시작한 미국제 MLRS는 1997년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인 1998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총 58문이 도입되었다. (1차-29문, 2차-29문) 그 이전에도 'K-136 구룡'이라는 구형 다연장로켓이 있었으나 명중률과 폭발력 그리고 장전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보통 육군의 무기체계의 경우 국내생산이나 면허개발을 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MLRS의 경우 로켓탄은 물론 탄약수송차량, 지휘장갑차, 구난전차등도 한꺼번에 미국으로부터 직수입하였으며 2003년 이후에야 (주)한화에 의한 자체개발·생산이 시작되게 된다.

58) MLRS M270모델 제원 (발사체와 탄두 사거리)

- 발사체 : 길이 6.85m/ 폭 2.97m/ 무게 25톤/ 무장능력 227m 로켓탄 12발 또는 ATACMS 2발 장착 가능
- 탄두 사거리 : M26모델-32km / M26A1모델-45km / ATACMS block1모델-165km / ATACMS block1A모델-300km



▲ MLRS 발사 장면

프전 당시 미군이 이라크에 본격적으로 사용하였고 이 공격을 목격한 사람들은 “강철의 비가 내린다”며 그때의 공포를 잊지 못하고 있다.

미국으로 MLRS를 직도입하면서 국방부는 더욱 가공할 무기를 하나 더 구매하는데 중거리 지대지미사일 ATACMS⁵⁹⁾가 그것이다. ATACMS는 1998년과 2002년 두 번에 걸친 MLRS 도입과정에서 모델을 달리하여 총 222발이 전력화되었다. 이 무기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확산탄으로 평가되는데 자탄이 최대 950발이 내장되며 개량형의 경우 최대사거리가 300km에 달해 북한의 신의주와 강계까지가 그 표적이 된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정부의 각서⁶⁰⁾를 받아두

59) ATACMS (Army Tactical Missile System) - 구형 랜스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미 록히드마틴사에서 1985년부터 개발한 전술지대지미사일, MLRS 발사대에 탑재되 발사되며 2발을 장착할 수 있다. 지속적 개발이 이루어져 현재 4가지 종류의 ATACMS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모델로서 950개의 자탄을 내장하며 최대 사거리가 165Kkm인 ATACMS block1, block1 모델의 탄두를 개량한 block2, 사거리를 최대 300km까지 확장하고 유도탄을 장착할 수 있는 block2A, 그리고 block1모델에서 자탄을 줄이는 대신 사거리를 확장한 block1A가 그것인데 한국의 경우 block1과 block1A 두 모델이 직수입돼 전력화 되었다. 최근 확산탄금지협약이 체결되면서 미 국방부가 확산탄의 불발율을 1%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그 제조 조건이 까다로워지자 록히드마틴사는 자탄이 내장된 방식에서 대형 폭약 하나만을 장착해 폭발력을 강화시키고 정확도를 높인 ATACMS 개발에 들어갔다고 한다.

60) 한미 미사일양해각서와 그 개정 - 1979년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에 써준 미사일 개발 제한 보장 각서, 한국 정부는 1979년 ‘백곰’, 현무 등 일련의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 ATACMS 발사 장면

고 있었는데 개량형 ATACMS의 경우 2001년 이 각서의 개정 직후에 도입된 것이다. 1발당 가격이 13억 원에 달해 그 비용 역시 막대하다.

그 외 초음속 경공격기 A-50에 장착되는 확산탄 MK-20 등 한국군에

서 운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여러 종류의 확산탄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2) 확산탄 무기체계의 구비와 막대한 비용의 문제

앞서 무기체계를 언급하며 간헐적으로 언급하였지만 이 가공할 무기의 구비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확산탄 무기체계에 투입되는 예산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① 다연장 로켓 체계(MLRS) 구비 비용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MLRS 주거래 업체인 한화를 통해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9,731억 2,9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미국으로부터 직도입한 MLRS 구

기술 지원을 받는 대가로 사거리가 180km이상인 어떤 미사일도 개발하거나 획득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다. 이 각서에 의해 한국의 미사일 개발 시도는 제한되어 오다 2001년 1월 이 각서가 개정되어 탄두 중량이 500kg이하, 사거리 300km이하의 미사일은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사거리가 1,500km에 이르는 순항미사일을 개발, 양산에 성공하여 동북아의 새로운 긴장요소로 불거진 바 있다.

매비용은 몽땅 빠진 내용이다.

내역은 다연장 탄약 확보와 탄약 창고의 건설 그리고 정비비 등이 포함되는데 그 연도별 사업비는 다음과 같다.

구분	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사업비	973,129	42,863	45,158	57,622	68,019	92,541	131,584	131,999	123,610	80,635	105,825	93,272

(단위 : 백만원)

MLRS 구비 비용⁶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거리 등 이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9년 부터는 차기 다연장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2013년까지 총 1546억 82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다.

② 대포병 탐지 레이더 무기체계 구비 비용

언급했다시피 북한을 상대로 한 대화력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배치된 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이 명목으로 탐지무기체계의 구비에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이는 비록 직접적인 타격 무기는 아니나 MLRS 등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므로 확산탄 무기 체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방부는 대포병탐지 레이더로 TPQ36과 37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의 추가 구비에 2947억 6100만원, 이의 성능 향상을 위해 219억 1400만원, 도합 총 3166억 75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하고 지난 2007년부터 배정해오고 있다.

61) 참고로 한화에서 구매하는 MLRS 탄두 1발의 가격은 32,432,169원(전력화용탄 기준)이다.

그 연도별 사업비는 다음과 같다.

대포병 탐지 레이더 구입 비용

구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사업비	294,761	50	46,418	22,215	28,743	31,586	41,004	59,928	37,048	22,769

(단위 : 백만원)

대포병 탐지 레이더 성능 개발 비용

구분	계	08	09	10	11	12
사업비	21,914	284	2,818	8,915	5,911	3,986

(단위 : 백만원)

③ 확산탄 주요 발사체 구비 비용

확산탄만을 발사하는 무기체계는 아니나 확산탄을 장착하여 발사할 수 있는 무기 체계에 투여되는 비용 역시 확산탄 무기체계의 구비 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K9자주포 구비 비용과 와 K55자주포의 성능개량 비용이 그것인데, 자주포는 MLRS와 더불어 대화력전 수행의 주요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K9자주포의 구비비용은 실로 천문학적 액수이다. 1990년에 최초로 소요가 제기 되고 1993년 개발이 시작되어 1999년~2000년 경 전력화되기 시작한 K-9 자주 포의 총사업비는 무려 8조 782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올해부터 예산으로 배정되기 시작한 구형인 K55자주포의 성능개량⁶²⁾ 비용 9750억 6700만원을 더하면

K-9자주포와 K-55 성능개량에 투입되는 총사업비 규모는 우리나라 1년 국방비 총액의 1/3에 육박하는 액수이다.

④ 전투예비탄으로서의 확산탄 구비 비용

한국군은 현재 한미간의 협정에 의해 미국이 인가한 기준에 맞춰 일정 종류와 일정 수량의 전투예비탄약을 보유해야 한다. (전투예비탄약과 관련한 미국의 권한에 대해서는 후술) 대표적으로 앞서 살펴본 DP-ICM이나 MPSM 등이 그것인데 올해 이 두 탄약에 배정된 예산은 총 808억 원으로 2010년 전투예비탄약 구비 예산 2182억 6600만원의 압도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확산탄 장착 가능 무기인 공격용 헬기, 전투기, 신형확산탄의 개발비 등을 더하면 확산탄 관련 무기체계를 구비하기 위한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3) 확산탄의 최대 수혜자, 군수산업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은 천문학적인 확산탄 무기체계 구비 비용은 몇몇 군수산업의 배를 불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다연장 로켓 체계(MLRS)를 생산하는 (주)한화의 예를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하리라고 본다.

① (주)한화의 최대 매출 품목 MLRS

1998년 MLRS의 국산화 방침에 따라(주)한화가 주 계약업체로 선정되자 (주)한화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기술도입협상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방부와 1조원 규모의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2003년 (주)한화는 대전에 227mm

62) K55자주포의 성능 개량이 완료되면 현재는 발사할 수 없는 개량형 확산탄인 155밀리 BB DP-ICM K310 등도 발사가 가능해진다.

대구경 MLRS 생산 공장을 준공하여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들어가는데 준공식에 조영길 국방부장관, 김종환 합참의장, 남재준 육참총장 등 당시의 군 수뇌부가 총 출동한 것은 군수산업계에서 (주)한화의 위상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었다. 이런 방산 부분의 활약에 힘입어 (주)한화의 주가는 지속적 상승세를 유지했고⁶³⁾ 이를 바탕으로 당시 국내 6위의 손해보험회사였던 제일화재 경영권을 인수하고 방산부분에서는 보다 공격적 마케팅에 들어간다. 2006년에는 독자 개발한 70mm MLRS를 국제 무기시장에 선보이며 요르단에 공급 및 공동 개발 공동 마케팅에도 나서게 된다. 현재 (주)한화는 국내 화약산업 시장의 80%수준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후 MLRS는 물론 미사일 정밀유도무기체계의 개발 그리고 해외의 항공·정밀무기 기업의 인수에도 나설 것이 예상된다.

이런 위험한 기업의 행태에 대해 세계 인권단체와 인도주의적 국가들은 좌시하지 않았고, (주)한화와 더불어 (주)풍산 역시 비윤리적인 기업, 비인도적인 기업이라는 낙인을 찍으며 노르웨이연금펀드의 경우 풍산에 투자했던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였다.

그럼에도 아직 이 두 기업은 국민과 함께 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선전하며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감추고 있다.

4) 한국에서의 확산탄 문제와 미국

한국에서의 확산탄 문제를 거론함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한 가지 더 언급되어야 하는 부분은 미국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 이유와 관련해서 기술하기에 앞서 확산탄의 금지와 관련한 미국의 태도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63) 당시의 관련 기사를 보면 “2002년 7월 31일 국방부와의 MLRS 공급계약 체결을 사측이 발표하자 오전내 보험권에 머물던 (주)한화의 주가가 15%가까이 급등하여 마치 로켓탄이 솟아 오르듯 상한가를 기록하며 상한가 사자 잔량만도 무려 100만주에 달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① 확산탄금지협약의 최대 방해자로서의 존재, 미국

여러 곳에서 언급되었지만 미국은 세계 최대의 확산탄 생산·보유국⁶⁴⁾이자 사용국이다. 확산탄은 2차대전 이후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었지만 미국만큼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탄을 사용한 나라는 없다. 1960~70년대 베트남 전쟁⁶⁵⁾을 시작으로 1991년 걸프전, 1999년 코소보전쟁, 2001년부터 시작된 아프간 전쟁, 2003년의 이라크 전쟁 그리고 작년 12월 예멘공습⁶⁶⁾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확산탄 사용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쟁마다 미국은 항상 가해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확산탄금지협약 체결의 발원이 되었던 2006년 레바논 전쟁의 경우 이스라엘이 주범이지만 이스라엘이 사용한 확산탄의 많은 부분을 미국이 제공하였다는 점⁶⁷⁾을 상기하면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미국은 확산탄금지협약의 체결에 철저히 반대로 일관하였다.⁶⁸⁾ 자신이 참가하지 않는 것은 물론 “확산탄을 쓰지 않으면 미군과 동맹국 군인들의 생명에 위협을 초해할 것”이라며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동맹국에게 조약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미국은 현재 확산탄금지조약에는 참가하지 않는 대신 제네바군축협상의 한 부분인 CCW(비인도적 재래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

64) 현재 미국은 자탄 기준으로 7억 5천만발 이상의 확산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5) 미국이 베트남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남아시아 주로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에 투하한 확산탄의 양은 3억 8천 3백만톤에 이르며 이 중 베트남에 투하한 확산탄은 9,700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항공연방청 자료 인용) 이로 인해 베트남은 전 국토의 20%가 확산불발탄으로 오염되었으며 전쟁 이후 폭발로 사망한 베트남인 수가 4만명을 넘으며 6만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확산탄의 최대피해국으로 알려진 라오스의 경우 자탄기준으로 총 2억6천만발의 확산탄이 투하되었으며 이 중 8천만발이 불발탄으로 남아 매년 4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확산탄으로 오염된 국토는 전체의 38%에 달한다.

66) 2010년 6월 7일 KBS는 “국제엠네스티는 작년(2009년) 12월 예멘공습에 미군이 개입되었으며 당시 미군은 공습에 확산탄을 사용하여 55명의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하였다.

67) 2007년 1월, 레바논에서의 확산불발탄 문제가 국제적으로 문제되고 이 책임에 대한 비난이 미국으로 향하자 미 행정부는 이 사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즉 미국이 이스라엘에 확산탄을 제공할 때 체결한 협정 위반으로 이스라엘에 제재를 가할 것이지 말것인지를 표결에 붙인 것이었다. 미 의회는 이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으나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68) 2007년 2월 24일,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열린 ‘확산탄 금지 국제회의’에 참가한 46개국이 각국 정부에 보낸 확산탄 포기 요청에 대해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손 메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당한 기술과 적합한 교전 규칙만 준수한다면 집속탄은 군 재고품 목록에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협정)의 틀 내에서 일정조건 하에서의 확산탄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불발율 감소(1% 미만) 과 자폭장치의 부착 등을 통해 확산탄을 개량하여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레바논의 사태에서 보여지듯 확산탄 예찬론자들의 공상에 불과하며 이런 신형확산탄을 개발할 여력이 없는 러시아 등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제안에 불과하다.

② 확산탄금지협약 참여의 걸림돌, 미국

이런 미국에게는 한반도 역시 주요 확산탄 사용 대상 지역이다. 이는 한국이 미국이 생산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확산탄을 수입하는 국가라는 점, 미군 훈련시 확산탄 투하 훈련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 미국의 대한반도 전쟁예비물자로 8,000발이 넘는 확산탄을 저장해두고 있는 점 등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여기서 잠시 미국의 대한반도 전시예비물자(WRSA-K)에 포함되어 있는 확산탄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2008년 11월, 한미 당국은 WRSA-K 52만5천톤(대부분은 탄약)의 인수 및 매각 협상⁶⁹⁾을 완료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은 25만 9천톤의 전쟁예비물자를 인수하였고, 26만 6천톤의 미인수 탄약 중 지뢰와 확산탄의 경우에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철수하되 철수되지 않고 잔존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무상으로 저장해두기로 하였다. 필자가 26만 6천톤 분량의 미인수탄의 목록과 수량이 적시된 자료를 살펴본 결과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대량의 비인도적 탄약(백린탄, 지뢰 등)⁷⁰⁾이 대량 포함되어 있었으며 확산탄만도 최소 8,469발⁷¹⁾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양이면 확산탄의 표준 확산면적 300평방미터로 확산했을 경우 여의도의 8배가 넘는 지역을 초토화시킬수 있

69) WRSA-K 협상과 관련하여서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탄약들이 대부분 1970년대를 전후로 한국에 배치된 것이어서 노후탄약으로 인수대상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2,713억원을 들여 이를 인수하였고, 노후탄약의 폐기 비용과 계속 저장되는 미군탄약의 미래저장비까지 떠안았다. 이를 통해 미국이 본 이익은 최소 3조원을 넘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70) 백린탄의 경우 201,299발, 지뢰의 경우 979,017발이 확인되었다.

71) 탄약 목록에서 ‘확산탄’이라고 적시된 것만을 더한 수치, 이외 2.75”고폭탄이나 ICM탄 등 확산탄일 것으로 추정되는 탄약도 대량 확인되었으나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생략하였다.

는 양이다. 이렇듯 미국이 국제적으로 불법화된 무기들을 우리나라에 저장해두고 있는 것이 마치 한국을 자신의 탄약 저장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실례로 미국은 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2004년과 2005년 이 전쟁에 비물자를 반출해 사용한 사실이 있다.⁷²⁾ 이때 반출된 탄약 중에 확산탄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분명한 것은 당시 미군은 이라크에 무차별적으로 확산탄을 투하하였고 이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과 어린이가 희생되었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한미간에 체결된 SALS-K 합의각서에 의해 우리의 국제조약 가입권이 침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㉓ 빼앗긴 탄약 주권의 문제, 전투예비탄에 대한 미국의 인가권

1974년 한미간에 체결된 SALS-K(정식명칭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재래식 탄약보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 간의 합의각서) 2조는 한국군 20개 사단의 45일분어치의 재래식탄약의 저장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 45일분어치의 탄약저장은 미국이 인가한 기준에 따른다(45 days of supply at U.S. approved rates for Korea)고 되어있다. 즉 전시 예비탄약에 관련한 결정권이 사실상 미국에 있는 것이다.

SALS-K 합의각서는 이와 더불어 한국 소유 탄약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 소유 재래식 탄약을 대한민국내에 저장할 것을 합의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고 있는 자국 소유의 전시예비탄약 중 8,469발의 확산탄은 바로 이 규정에 근거하여 존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WRSA-K 인수 협상에서 비록 한국정부가 지뢰와 확산탄의 경우 계속 보관을 요청했다고 하나 앞서 언급한대로 전시예비탄약과 관련한 결정권이 사실상 미국에 있음을 상기한다면 실제로는 미국의 이해와 요구가 관철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미국은 이러한 인가권을 이용해 한국군이

72) 당시 미국정부는 이 탄약의 과거저장비 명목으로 우리정부에 43억원을 지불한 바 있다.

특정한 탄약을 보유하게 할 수도 있고, 수입하게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이 한국군의 전시예비탄약으로 확산탄을 규정하면 한국군은 이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만약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바꿔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려 하더라도 미국의 협조 없이는 가입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헌법상 규정된 국제조약에의 가입권⁷³⁾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위 합의각서의 독소조항을 폐기해야한다.

5) 확산탄 전면 폐기와 금지협약에의 가입에 대한 한국 정부(국방부) 입장의 문제점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에서는 올해 매달 열리는 평화군축 집회를 통해 확산탄의 전면 폐기와 금지협약에의 가입과 관련한 항의서한과 공개질의서를 국방부측에 수차례 보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확산탄의 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정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본 절에서는 이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전개해보고자 한다.

필자가 확인한 확산탄 문제에 관한 국방부의 입장은 미국의 그것과 너무도 닮아 있다. 즉 불발탄 등 확산탄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국방부는 2008년 확산탄의 구매기준으로 불발율이 1%미만이거나 자폭장치 등의 구비를 정한 바 있다. 소위 신형 확산탄의 개발로 확산탄의 문제를 피해가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구형 확산탄의 폐기 요구에 대해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국방부 스스로 내세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합리성을 상실한 태도이다. 신형 확산탄의 구매기준을 설정한 것은 구형 확산탄의 문제를 인정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러한 구형 확산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73) 우리 헌법 60조는 국회의 권한으로 조약의 체결에 관한 동의권을, 73조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조약 체결·비준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CCM(확산탄금지협약)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CCW(특정재래무기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한 협약)에는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CCW는 미국이 중심으로 되어 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확산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전력에 손실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논의에 참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국방부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확산탄의 규제라는 것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군축에 해당한다. 군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군사력의 제한과 감축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국방부의 입장처럼 전력에 손실이 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전제한 채 국제 군축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군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군축회의에 임하는 국방부 및 한국정부의 입장 자체의 변화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앞절에서 언급한 확산탄과 관련한 미국의 문제에 대한 답변에서 국방부는 일관성을 상실했는데 2010년 4월 27일 국방부에 전달된 1차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는 SALS-K협정에 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며 미국이 한국군이 보유하는 (전시예비)탄약을 결정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가 2010년 6월 24일의 2차 공개질의서에서 관련 근거를 제시하며 다시 문제제기 하자 이에 대한 답변서에서 국방부는 한미간의 합의각서는 연합방위의 큰 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이 합의사항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아마도 SALS-K에 의해 우리의 탄약 주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호도하거나 관련 협정에 대한 무지함이 이런 현상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주권회복 차원에서 보면 국방부의 이러한 태도는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수차례의 항의서한과 공개질의서에서 일관되게 다른 나라와 다른 우리의 독특한 또는 특수한 안보환경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황과 상존하는 전면전의 위험 때문에 확산탄을 완전히 폐기하고 금지협약에 가입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사례로 북한의 장사정포, 화학무기, 핵실험과 최근의 천안함 사건 등을 언급하였다.

국방부의 이런 주장과 관련하여 먼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국방부가 열거하는 독특한 안보환경의 요인들이 바로 남한의 확산탄 보유의 근거로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확산탄을 폐기하고 상호 금지협약에 가입해야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반세기 가 넘는 한반도의 대립과 갈등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얻은 경험은 일방의 적대행위의 수위만큼 또 위협적 군사행동의 수위만큼 또 다른 일방의 대응을 불러와 관계의 악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왔다는 것이다. 일례로 2006년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 역시 그러한 경험의 연장선에 있다.

미국은 한국전쟁 직후 개최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일방적으로 결렬시키고 1957년부터 남한에 핵무기를 실전배치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팀스피리트라 불리던 세계 최대의 대북핵공격연습을 전개하여 한반도의 핵위기를 조장하였으며 이는 이름만 바뀐 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⁷⁴⁾

냉전 해체 시기였던 1991년, 미·소간의 핵협상과정에서 미국은 남한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철수시켰지만 대북 핵위협은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이른바 ‘핵우산’이라 불리우는 미국의 확장된 억지전략은 보복수단으로서 북에 대한 핵공격을 정식화 하고 있다. 1992년부터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일련의 북·미 핵협상을 진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을 선제핵공격 대상으로 규정하고⁷⁵⁾, 북에 대한 선제핵공격계획인 콘플랜 8022⁷⁶⁾와 북의 공격에 없더라도 먼저 공격한다는

74) 1976년부터 진행된 팀스피리트 훈련은 1990년대 초 대대적인 반대운동에 직면하자 일시 중단되었다가 1994년 RSOI훈련으로 이름을 바꿔 재개되었다. 지난 2008년부터는 키리졸브로 다시 이름을 바꿔 매년 상반기에 남한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75) 부시 정권은 2002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북을 선제핵공격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북한의 지하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핵폭탄 개발에 착수했다.

76) 대북 선제공격계획 CON PLAN 8022 : 비록 그 과도한 공격성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폐기된 것으로 공표되었지만 이 개념계획은 부시행정부의 선제공격전략(Preemptive)을 구체화한 것으로 극비리에 수립된 비밀공격작전계획 또는 통상 지구촌 공습 작전 계획(Global strike)으로 불리고 있으며 지구촌 어느 곳의 압박한 위협에 대해서도 수분안에 폭격해 신속하게 괴멸시키는

내용의 작전계획 5029⁷⁷⁾ 그리고 지속적인 핵공격연습⁷⁸⁾을 진행함으로써 결국 협상을 파탄으로 이끌었다. 이런 항상적인 미국의 핵위협에 직면한 북한은 자위적 수단으로 핵무기의 보유를 선택하였고⁷⁹⁾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한반도는 일촉즉발 핵전쟁의 위기속으로 빠져들었다.

확산탄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북한의 장사정포를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본격화 된 남한의 확산탄 무기체계의 증강은 북한을 자극해 더 격렬한 확산탄 군비 경쟁에 남북한을 내몰게 될 것이다. 남한은 이미 1980년대에 총액규모에서 북한을 군비면에서 앞서기 시작했으며 현재에는 북한보다 45배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⁸⁰⁾ 그럼에도 확산탄을 폐기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논리의 비약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글을 마치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CONPLAN 8022는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만 다루려는 구체적인 선제 공격계획으로 재래식, 사이버 공격을 동시에 단행하는 것은 물론 두 나라의 핵무기 **'사용 징후시'** 미국이 즉각 **'핵무기까지 사용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77) 기존 '콘플랜 5029'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돌연사나 축출, 쿠데타 등 북한 붕괴에 대비한 비상계획으로,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해 한·미 연합사령부에 의해 세워진 작전계획(작계)인 '오펜(Oplan) 5027'을 보완하는 개념이었다. '작계 5027'이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의 한반도 전면전과 관련한 군사작전이었던데 반해 개념계획 5029는 북한 핵무기 실험 후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침공이 없더라도 북한에 대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비상계획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새로운 비상계획이 북한이 한국을 먼저 침공하거나 공격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취할 수 있도록 한 한·미간의 첫 공동계획이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2006년 10월 29일자 워싱턴포스트 보도 인용)

78) 세계적인 반핵단체 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은 1998년 북의 금창리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대북 모의핵공격연습을 수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79)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무기의 보유를 선언한 것은 2005년 2월 10일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미국 Atlantic Council Working Group의 보고서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데니스 블레이어(Dennis Blair) 미국 국가정보국(DNI)국장은 "북한 당국은 핵무기를 전쟁(warfighting)보다 전쟁억지, 국제적 지위, 강제적인 외교수단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면서 "체제 위협이 없으면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의 증언, 2009.2.12)한 바 있다.

80) 2008년 기준으로 북한의 국방비는 5억 5000천 달러인데 반해 남한은 247억 달러를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다. (통일부 자료)

필자가 2008년 5월 확산탄금지협약의 체결 기사를 통해 처음으로 확산탄의 문제를 접한 이후 틈틈이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느껴졌던 감정은 두려움이 었다. 자료를 수집하면 할수록 확산탄의 문제가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서서히 자리했기 때문이다. 이 토론문을 작성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동쪽 바다에서는 남한과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이 총 동원돼 전쟁훈련이 한창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만약 이 땅에 전쟁이 발발하고 남북한 할 것 없이 자신이 보유한 무기들을, 특히 확산탄을 무차별 사용한다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레바논 등에서 벌어졌던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고통의 몇 배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국방부와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국민에게 들이대고 있는 국가의 안보라는 것이 단지 끄찍하고 무시무시한 무기를 많이 보유한다 해서 지켜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총칼로서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국방부와 한국정부에 상기시키며 남북한 상호 군축의 시작으로 확산탄의 폐기와 금지협약에의 가입이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음을 권하는 바이다. (끝)

<토론문>

집속탄(확산탄) 반대 운동에서 NGO의 역할 및 외국 사례

최정민 (무기제로팀, jungmin.duck@gmail.com)

만약 국가가 집속탄금지협약의 이행을 통해 시민사회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킨다면 국가는 “집속탄에 의한 고통과 사상자들의 모든 시간에 종지부를 찍을” 목적을 완수하는 건강하고 실용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다. (Thomas Nash)

멀리 외국 활동가의 말을 인용할 필요도 없이 한국 사회의 법이나 제도의 도입과 실천을 봤을 때 이는 아주 자명한 얘기입니다. 국가는 전문지식의 원천, 분석, 에너지, 열정, 정치적 공간 등등으로 시민사회를 필요로 합니다. 저의 10년간의 병역거부 운동의 경험으로 봤을 때도 캠페인, 입법운동, 국회로비, 법정투쟁, 언론상대, 감옥지원 등 연대회의가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야만 국가가 겨우 조금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권이 바뀌니 바로 호떡 뒤집듯이 뒤집었지만요.

오슬로프로세스와 집속탄금지협약의 발효에는 집속탄반대연합(CMC)과 같은 NGO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는 1999년 대인지뢰금지협약이 발효될 당시 NGO들의 역할과 비견되곤 하는데요 대인지뢰금지협약의 발효 역시 집속탄금지협약과 마찬가지로 유례없이 민간인이 주도해서 국제협약을 체결시킨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 협약의 경우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이를 조정하고 강제할 수단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비정부기구가 이를 주도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운동을 주도했던 ICBL와 조디 월

리엄스는 1997년 노벨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집속탄 금지를 위한 노력은 2003년 집속탄반대연합이 발족하기 이전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MCC)에서 “Drop Today, Kill Tomorrow”라는 이슈리포트를 발간한 것을 시작으로 1999년에는 영향력 있는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유고슬라비아에서 나토가 집속탄을 사용한 것을 고발하는 리포트를 발간하고 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에서 집속탄의 사용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것을 요청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랜드마인액션(LAUK) 등의 단체 역시 집속탄에 관한 이슈리포트 발간하고 컨퍼런스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에는 마인즈액션캐나다(MAC)가 집속탄의 생산, 판매, 이송 및 사용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것을 자국 정부에 요청하고 모라토리움 기간 혹은 이후 금지 기간 동안 집속탄이 사용되는 동맹훈련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같은 해 노르웨이 의회는 정부가 집속탄의 국제적 금지를 위한 활동을 벌일 것을 독려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재래식무기금지협약 제2차 평가회의에서는 전쟁잔류폭발물(ERW)에 관한 임무가 합의되기도 합니다.

2003년 4월 팩스크리스티아일랜드(Pax Christi Ireland)주최로 더블린에서 열린 전쟁잔류폭발물 관련한 회의에서 NGO들은 집속탄 문제를 다룰 국제적인 조직을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11월 헤이그에서 집속탄반대연합이 발족하게 됩니다. 같은 달 유엔 정부부처간상임위원회가 집속탄 사용금지를 요청하고 재래식무기금지협약 당사국들이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제5의정서를 채택합니다. 하지만 집속탄 문제를 다룰 어떠한 의미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 발족 이후 집속탄반대연합과 소속 단체들은 지속적인 이슈리포트를 발간하였고 활발한 워크샵, 캠페인, 로비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성과로 2004년 10월, 유럽의회는 EU 멤버들에게 집속탄의 사용, 비축, 생산, 이송 및 수출을 일시적으

로 금지시킬 법안을 제정할 것과 집속탄 사용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의 논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2005년에는 Mahoux 상원의원이 벨기에 의회에 “파쇄폭탄(fragmentation bombs)”을 금지하는 법안(이후 “소폭탄(submunitions)”로 수정됨)을 제출하고 2006년 2월에 세계 최초로 집속탄 사용, 생산, 이송, 비축을 금하는 국내법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벨기에 시민단체들은 물론 집속탄금지연합의 많은 활동가들이 벨기에 의회에 편지 보내기 캠페인 등 세계 최초의 국내법 제정 국가를 탄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그 시기 노르웨이정부연금지금은 집속탄 생산에 관여한 8개의 회사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고 2006, 2008년 몇 개의 회사를 더 제외시킵니다.

2006년 벽두 벨기에를 시작으로 6월 노르웨이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7월에는 오스트리아 의회가 자국 정부에 집속탄 혹은 폭탄에 관한 재래식무기금지협약 특별의정서 준비 및 또 다른 적절한 국제법 조치들을 지원할 것을 결의합니다. 이 시기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의 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남부 레바논에 대량의 집속탄을 사용합니다. 집속탄반대연합과 소속 단체들은 즉각 회의를 개최하고 이슈리포트트를 발간하는 등 재빠르게 레바논의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10월, 오스트리아, 교황청,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스웨덴은 재래식무기금지협약 차원에서 집속탄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사안들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을 발의하고 11월,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집속탄의 사용을 중지할 것과 “부정확하고 믿을 수 없는” 집속탄의 폐기를 요청합니다. 한편 재래식무기금지협약 회의에서 25개국이 부정확하고 믿을 수 없는 집속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협정을 요청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노르웨이는 이 협약 바깥에서 집속탄 문제를 논의할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드디어 2007년 2월 오슬로 회의가 개최되고 집속탄을 금지시킬 국제협약을 제정

하기로 합의합니다. 또 3월 벨기에는 구체적으로 집속탄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킵니다. 2007년은 집속탄반대연합과 소속 단체들이 활발하게 토론을 벌이고 리포트를 발간한 해였으며 11월 5일 전 세계 40여 개 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속탄을 금지하기 위한 공동행동이 조직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재래식무기금지협약 자체에서 집속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고 12월에는 신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씨가 집속탄의 금지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기 오스트리아 의회는 포괄적으로 집속탄을 금지하는 국내법을 채택합니다.

2008년 2월 뉴질랜드 웰링턴 회의를 거쳐 5월 더블린에서 집속탄 금지에 관한 협약이 체결됩니다. 2008년 역시 2007년과 마찬가지로 집속탄반대연합 및 소속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대륙별 각종 지역 컨퍼런스들이 개최되었고 두 번째 전 세계 공동행동이 소집되었으며 집속탄금지협약이 채택된 이후에는 집속탄반대연합과 마인즈액션캐나다가 공동으로 “People's Treaty” 청원운동을 발족했고 레바논 집속탄 사용 2주년에 즈음한 각종 촛불집회, 그루지야와 러시아가 남부 오세티야에 집속탄을 사용한 것에 대한 규탄 집회, 베오그라드에서부터 오슬로까지 “금지 버스(Ban Bus)” 캠페인 등 많은 활동이 전개되었고 마침내 12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조인식이 열리게 됩니다.

조인식 이후 집속탄반대연합과 소속 단체들은 협약에 서명한 국가들이 속히 자국내에서 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광범위하게 벌입니다. 2009년 미국의 새 대통령 오바마는 거의 모든 미국 집속탄의 수출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하게 되며 집속탄반대연합은 티퍼러리국제평화상(Tipperary International Peace Award)을 수상하는 등 그 영향력을 인정받고 30개국의 승인을 받아 내일 모레 법안의 정식적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집속탄을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활동이 이렇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8개의 집속탄 생산 기업(미국 4, 한국 2, 터키 1, 싱가포르 1) 가운데 2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자 최대 수입국인 한국에서는 정작 이에 관한 활동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녹색연합과 평통사를 중심으로 집속탄 문제를 간간히 제기해왔고 저희 무기제로팀이 이 문제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수한 남북관계를 이유로 집속탄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또 재래식무기금지협약이 있기 때문에 따로 집속탄만을 금지하는 협약은 필요 없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거의 나몰라라하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집속탄금지협약이 발효되는 이 시점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집속탄이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아주 나쁜 폭탄이고 관련 조약이 발효되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일입니다. 아마 정부가 이 사실을 알릴 것 같진 않기 때문에 이것은 NGO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은 한국과 같이 아직 집속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게도, 또 이미 집속탄금지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도 이 조약이 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무기제로팀 차원에서 몇몇 국회의원들과 접촉해본 결과 이 미션은 비단 일반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국방부, 외통부를 비롯한 정부 측과 국회의원 등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모르고 계시고 따라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집속탄금지협약의 체결에서 영국의 수상 고든 브라운이 막판에 생각을 뒤집은 것이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한국의 운동도 언론, 로비활동 등을 통해 시민사회가 중요한 시점에 어떻게 이러한 의사결정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좀 더 세심히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의 경우 집속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2008년 7월 한국에 정식으로 발효된 재래식무기금지협약 제5의정서가 관련한 문

제를 다루고 있어 충분하며 오히려 여기서 집속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재승 교수님의 발제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제5의정서가 효과적으로 집속탄 문제를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나 광범위한 차원에서 이 두 협약의 의무는 연결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래식무기금지협약 제5의정서 당사국이라는 차원에서도 역시 집속탄을 금지해야하는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홍보하고 로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속탄금지협약에 비해 일반적이긴 하지만 제5의정서에서도 전후 불발탄과 버려진 무기에 대해 구체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보의 교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 의무 없이 명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한국 정부가 단박에 집속탄금지협약에 가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래식무기금지협약의 당사국이니까 미국처럼 수출만은 자제하는 법안을 고려해보는 건 어떠냐 뭐 이렇게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기제로팀은 현재 1달에 1번 한화와 풍산 앞에서 집속탄 생산 중단을 촉구하는 다이인แคม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여름 휴가가 끝나고 하반기에도 다양한 액션들을 기획하고 있으니 늘 홈페이지를 주시해주시길 바랍니다. (끝)

[확산탄 금지 협약 원문]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DUBLIN 19 – 30 MAY 2008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Deeply concerned that civilian populations and individual civilians continue to bear the brunt of armed conflict,

Determined to put an end for all time to the suffering and casualties caused by cluster munitions at the time of their use, when they fail to function as intended or when they are abandoned,

Concerned that cluster munition remnants kill or maim civilians,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obstruct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cluding through the loss of livelihood, impede post-conflict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delay or prevent the return of refugees and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can negatively impact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ace-building and humanitarian assistance efforts, and have other severe consequences that can persist for many years after use,

Deeply concerned also at the dangers presented by the large national stockpiles of cluster munitions retained for operational use and determined to ensure their rapid destruction,

Believing it necessary to contribute effectively in an efficient, coordinated manner to resolving the challenge of removing cluster munition remnants located throughout the world, and to ensure their destruction,

Determined also to ensure the full realisation of the rights of all cluster munition victims and recognising their inherent dignity,

Resolved to do their utmost in providing assistance to cluster munition victims, including medical care, rehabilitation and psychological support, as well as providing for their social and economic inclusion,

Recognising the need to provide age- and gender-sensitive assistance to cluster

munition victims and to address the special needs of vulnerable groups,
Bearing in mi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inter alia, requires that States Parties to that Convention undertake to ensure and promote the full realisation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on the basis of disability,

Mindful of the need to coordinate adequately efforts undertaken in various fora to address the rights and needs of victims of various types of weapons, and resolved to avoid discrimination among victims of various types of weapons,

Reaffirming that in cases not covered by this Convention or by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civilians and combatants remain under the protection and authority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derived from established custom, from the principles of humanity and from the dictates of public conscience,

Resolved also that armed groups distinct from the armed forces of a State shall not, under any circumstances, be permitted to engage in any activity prohibited to a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Welcoming the very broad international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norm prohibiting anti-personnel mines, enshrined in the 1997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Personnel Mines and on Their Destruction,

Welcoming also the adoption of the Protocol on Explosive Remnants of War, annexed to the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and its entry into force on 12 November 2006, and wishing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civilians from the effects of cluster munition remnants in post-conflict environments,

Bearing in mind also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and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612 on children in armed conflict,

Welcoming further the steps taken nationally, regionally and globally in recent years aimed at prohibiting, restricting or suspending the use, stock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cluster munitions,

Stressing the role of public conscience in furthering the principles of humanity as evidenced by the global call for an end to civilian suffering caused by cluster munitions and recognising the efforts to that end undertaken by the United

Nations,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the Cluster Munition Coalition and numerous other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round the world, Reaffirming the Declaration of the Oslo Conference on Cluster Munitions, by which, inter alia, States recognised the grave consequences caused by the use of cluster munitions and committed themselves to conclude by 2008 a legally binding instrument that would prohibit the use, production, transfer and stockpiling of cluster munitions that cause unacceptable harm to civilians, and would establish a framework for cooperation and assistance that ensures adequate provision of care and rehabilitation for victims, clearance of contaminated areas, risk reduction education and destruction of stockpiles,

Emphasising the desirability of attracting the adherence of all States to this Convention, and determined to work strenuously towards the promotion of its universalisation and its full implementation,

Basing themselves on the principl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particular the principle that the right of parties to an armed conflict to choose methods or means of warfare is not unlimited, and the rules that the parties to a conflict shall at all times distinguish between the civilian population and combatants and between civilian objects and military objectives and accordingly direct their operations against military objectives only, that in the conduct of military operations constant care shall be taken to spare the civilian population, civilians and civilian objects and that the civilian population and individual civilians enjoy general protection against dangers arising from military operation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General obligations and scope of application

Each State Party undertakes never under any circumstances to:

- (a) Use cluster munitions;
- (b) Develop, produce, otherwise acquire, stockpile, retain or transfer to anyone, directly or indirectly, cluster munitions;
- (c) Assist, encourage or induce anyone to engage in any activity prohibited to a State Party under this Conventio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pplies, mutatis mutandis, to explosive bomblets that are specifically designed to be dispersed or released from dispensers affixed to

aircraft.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mines.

Article 2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1. “Cluster munition victims” means all persons who have been killed or suffered physical or psychological injury, economic loss, social marginalisation or substantial impairment of the realisation of their rights caused by the use of cluster munitions. They include those persons directly impacted by cluster munitions as well as their affected families and communities;

2. “Cluster munition” means a conventional munition that is designed to disperse or release explosive submunitions each weighing less than 20 kilograms, and includes those explosive submunitions. It does not mean the following:

(a) A munition or submunition designed to dispense flares, smoke, pyrotechnics or chaff; or a munition designed exclusively for an air defence role;

(b) A munition or submunition designed to produce electrical or electronic effects;

(c) A munition that, in order to avoid indiscriminate area effects and the risks posed by unexploded submunitions, has all of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i) Each munition contains fewer than ten explosive submunitions;

(ii) Each explosive submunition weighs more than four kilograms;

(iii) Each explosive submunition is designed to detect and engage a single target object;

(iv) Each explosive submunition is equipped with an electronic self-destruction mechanism;

(v) Each explosive submunition is equipped with an electronic self-deactivating feature;

3. “Explosive submunition” means a conventional munition that in order to perform its task is dispersed or released by a cluster munition and is designed to function by detonating an explosive charge prior to, on or after impact;

4. “Failed cluster munition” means a cluster munition that has been fired,

dropped, launched, projected or otherwise delivered and which should have dispersed or released its explosive submunitions but failed to do so;

5. “Unexploded submunition” means an explosive submunition that has been dispersed or released by, or otherwise separated from, a cluster munition and has failed to explode as intended;

6. “Abandoned cluster munitions” means cluster munitions or explosive submunitions that have not been used and that have been left behind or dumped, and that are no longer under the control of the party that left them behind or dumped them. They may or may not have been prepared for use;

7. “Cluster munition remnants” means failed cluster munitions, abandoned cluster munitions, unexploded submunitions and unexploded bomblets;

8. “Transfer” involves, in addition to the physical movement of cluster munitions into or from national territory, the transfer of title to and control over cluster munitions, but does not involve the transfer of territory containing cluster munition remnants;

9. “Self-destruction mechanism” means an incorporated automatically-functioning mechanism which is in addition to the primary initiating mechanism of the munition and which secures the destruction of the munition into which it is incorporated;

10. “Self-deactivating” means automatically rendering a munition inoperable by means of the irreversible exhaustion of a component, for example a battery, that is essential to the operation of the munition;

11. “Cluster munition contaminated area” means an area known or suspected to contain cluster munition remnants;

12. “Mine” means a munition designed to be placed under, on or near the ground or other surface area and to be exploded by the presence, proximity or contact of a person or a vehicle;

13. “Explosive bomblet” means a conventional munition, weighing less than 20 kilograms, which is not self-propelled and which, in order to perform its task, is dispersed or released by a dispenser, and is designed to function by detonating an explosive charge prior to, on or after impact;

14. “Dispenser” means a container that is designed to disperse or release explosive bomblets and which is affixed to an aircraft at the time of dispersal or release;

15. “Unexploded bomblet” means an explosive bomblet that has been dispersed, released or otherwise separated from a dispenser and has failed to explode as intended.

Article 3

Storage and stockpile destruction

1. Each State Party shall, in accordance with national regulations, separate all cluster munitions under its jurisdiction and control from munitions retained for operational use and mark them for the purpose of destruction.

2. Each State Party undertakes to destroy or ensure the destruction of all cluster muni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s soon as possible but not later than eight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that State Party. Each State Party undertakes to ensure that destruction methods comply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rotecting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3. If a State Party believes that it will be unable to destroy or ensure the destruction of all cluster muni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ithin eight years of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that State Party it may submit a request to a Meeting of States Parties or a Review Conference for an extension of the deadline for completing the destruction of such cluster munitions by a period of up to four years. A State Party ma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request additional extensions of up to four years. The requested

extensions shall not exceed the number of years strictly necessary for that State Party to complete its obligations under paragraph 2 of this Article.

4. Each request for an extension shall set out:

- (a) The duration of the proposed extension;
- (b)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proposed extension, including the financial and technical means available to or required by the State Party for the destruction of all cluster muni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d, where applicable,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justifying it;
- (c) A plan for how and when stockpile destruction will be completed;
- (d) The quantity and type of cluster munitions and explosive submunitions held at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that State Party and any additional cluster munitions or explosive submunitions discovered after such entry into force;
- (e) The quantity and type of cluster munitions and explosive submunitions destroyed during the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nd
- (f) The quantity and type of cluster munitions and explosive submunitions remaining to be destroyed during the proposed extension and the annual destruction rate expected to be achieved.

5. The Meeting of States Parties or the Review Conference shall,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factors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assess the request and decide by a majority of votes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whether to grant the request for an extension. The States Parties may decide to grant a shorter extension than that requested and may propose benchmarks for the extension, as appropriate. A request for an extension shall be submitted a minimum of nine months prior to the Meeting of States Parties or the Review Conference at which it is to be considered.

6.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of this Convention, the retention or acquisition of a limited number of cluster munitions and explosive submun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nd training in cluster munition and explosive submunition detection, clearance or destruction techniques, or for the development of cluster munition counter-measures, is permitted. The amount of explosive submunitions retained or acquired shall not exceed the minimum number absolutely necessary

for these purposes.

7.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of this Convention, the transfer of cluster munitions to another State Party for the purpose of destruction, as well as for the purposes described in paragraph 6 of this Article, is permitted.

8. States Parties retaining, acquiring or transferring cluster munitions or explosive submunitions for the purposes described in paragraphs 6 and 7 of this Article shall submit a detailed report on the planned and actual use of these cluster munitions and explosive submunitions and their type, quantity and lot numbers. If cluster munitions or explosive submunitions are transferred to another State Party for these purposes, the report shall include reference to the receiving party. Such a report shall be prepared for each year during which a State Party retained, acquired or transferred cluster munitions or explosive submunitions and shall be submitt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no later than 30 April of the following year.

Article 4

Clearance and destruction of cluster munition remnants and risk reduction education

1. Each State Party undertakes to clear and destroy, or ensure the clearance and destruction of, cluster munition remnants located in cluster munition contaminated areas 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as follows:

(a) Where cluster munition remnants are located in areas 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at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that State Party, such clearance and destruction shall be completed as soon as possible but not later than ten years from that date;

(b) Where,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that State Party, cluster munitions have become cluster munition remnants located in areas 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such clearance and destruction must be completed as soon as possible but not later than ten years after the end of the active hostilities during which such cluster munitions became cluster munition remnants; and

(c) Upon fulfilling either of its obligations set out in sub-paragraphs (a) and (b) of this paragraph, that State Party shall make a declaration of compliance to the

next Meeting of States Parties.

2. In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each State Party shall take the following measures as soon as possibl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rovisions of Article 6 of this Convention regar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a) Survey, assess and record the threat posed by cluster munition remnants, making every effort to identify all cluster munition contaminated areas 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b) Assess and prioritise needs in terms of marking, protection of civilians, clearance and destruction, and take steps to mobilise resources and develop a national plan to carry out these activities, building, where appropriate, upon existing structures, experiences and methodologies;

(c) Take all feasible steps to ensure that all cluster munition contaminated areas 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are perimeter-marked, monitored and protected by fencing or other means to ensure the effective exclusion of civilians. Warning signs based on methods of marking readily recognisable by the affected community should be utilised in the marking of suspected hazardous areas. Signs and other hazardous area boundary markers should, as far as possible, be visible, legible, durable and resistant to environmental effects and should clearly identify which side of the marked boundary is considered to be within the cluster munition contaminated areas and which side is considered to be safe;

(d) Clear and destroy all cluster munition remnants located in areas 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and

(e) Conduct risk reduction education to ensure awareness among civilians living in or around cluster munition contaminated areas of the risks posed by such remnants.

3. In conducting the activ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each State Party shall take into account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IMAS).

4. This paragraph shall apply in cases in which cluster munitions have been used or abandoned by one State Party prior to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that State Party and have become cluster munition remnants that are located in

areas under the jurisdiction or control of another State Party at the tim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the latter.

(a) In such cases, upon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both States Parties, the former State Party is strongly encouraged to provide, inter alia, technical, financial, material or human resources assistance to the latter State Party, either bilaterally or through a mutually agreed third party, including through the United Nations system or other relevant organisations, to facilitate the marking, clearance and destruction of such cluster munition remnants.

(b) Such assistance shall include, where available, information on types and quantities of the cluster munitions used, precise locations of cluster munition strikes and areas in which cluster munition remnants are known to be located.

5. If a State Party believes that it will be unable to clear and destroy or ensure the clearance and destruction of all cluster munition remna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ithin ten years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that State Party, it may submit a request to a Meeting of States Parties or a Review Conference for an extension of the deadline for completing the clearance and destruction of such cluster munition remnants by a period of up to five years. The requested extension shall not exceed the number of years strictly necessary for that State Party to complete its obligations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6. A request for an extension shall be submitted to a Meeting of States Parties or a Review Conference prior to the expiry of the time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for that State Party. Each request shall be submitted a minimum of nine months prior to the Meeting of States Parties or Review Conference at which it is to be considered. Each request shall set out:

(a) The duration of the proposed extension;

(b)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reasons for the proposed extension, including the financial and technical means available to and required by the State Party for the clearance and destruction of all cluster munition remnants during the proposed extension;

(c) The preparation of future work and the status of work already conducted under national clearance and demining programmes during the initial ten year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d any subsequent extensions;

- (d) The total area containing cluster munition remnants at the tim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that State Party and any additional areas containing cluster munition remnants discovered after such entry into force;
- (e) The total area containing cluster munition remnants cleared sinc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 (f) The total area containing cluster munition remnants remaining to be cleared during the proposed extension;
- (g) The circumstances that have impeded the ability of the State Party to destroy all cluster munition remnants located in areas 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during the initial ten year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d those that may impede this ability during the proposed extension;
- (h) The humanitarian,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lications of the proposed extension; and
- (i) Any other information relevant to the request for the proposed extension.

7. The Meeting of States Parties or the Review Conference shall,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factors referred to in paragraph 6 of this Article, including, inter alia, the quantities of cluster munition remnants reported, assess the request and decide by a majority of votes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whether to grant the request for an extension. The States Parties may decide to grant a shorter extension than that requested and may propose benchmarks for the extension, as appropriate.

8. Such an extension may be renewed by a period of up to five years upon the submission of a new reques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5, 6 and 7 of this Article. In requesting a further extension a State Party shall submit relevant additional information on what has been undertaken during the previous extension granted pursuant to this Article.

Article 5

Victim assistance

1. Each State Party with respect to cluster munition victims in areas 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shall,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law, adequately provide age- and gender-sensitive

assistance, including medical care, rehabilitation and psychological support, as well as provide for their social and economic inclusion. Each State Party shall make every effort to collect reliable relevant data with respect to cluster munition victims.

2. In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each State Party shall:

- (a) Assess the needs of cluster munition victims;
- (b) Develop, implement and enforce any necessary national laws and policies;
- (c) Develop a national plan and budget, including timeframes to carry out these activities, with a view to incorporating them within the existing national disability,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frameworks and mechanisms, while respecting the specific role and contribution of relevant actors;
- (d) Take steps to mobilise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sources;
- (e) Not discriminate against or among cluster munition victims, or between cluster munition victims and those who have suffered injuries or disabilities from other causes; differences in treatment should be based only on medical, rehabilitative, psychological or socio-economic needs;
- (f) Closely consult with and actively involve cluster munition victim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 (g) Designate a focal point within the government for coordination of matter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Article; and
- (h) Strive to incorporate relevant guidelines and good practices including in the areas of medical care, rehabilitation and psychological support, as well as social and economic inclusion.

Article 6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1. In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each State Party has the right to seek and receive assistance.

2. Each State Party in a position to do so shall provide technical, material and financial assistance to States Parties affected by cluster munitions, aimed at the implementation of the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 Such assistance may be

provided, inter alia, through the United Nations system, international, regional or national organisations or institutions,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or institutions, or on a bilateral basis.

3. Each State Party undertakes to facilitate and shall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fullest possible exchange of equipment an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The States Parties shall not impose undue restrictions on the provision and receipt of clearance and other such equipment and related technological information for humanitarian purposes.

4. In addition to any obligations it may have pursuant to paragraph 4 of Article 4 of this Convention, each State Party in a position to do so shall provide assistance for clearance and destruction of cluster munition remnants and information concerning various means and technologies related to clearance of cluster munitions, as well as lists of experts, expert agencies or national points of contact on clearance and destruction of cluster munition remnants and related activities.

5. Each State Party in a position to do so shall provide assistance for the destruction of stockpiled cluster munitions, and shall also provide assistance to identify, assess and prioritise needs and practical measures in terms of marking, risk reduction education, protection of civilians and clearance and destruction as provided in Article 4 of this Convention.

6. Where,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cluster munitions have become cluster munition remnants located in areas under the jurisdiction or control of a State Party, each State Party in a position to do so shall urgently provide emergency assistance to the affected State Party.

7. Each State Party in a position to do so shall provide assistanc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oblig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5 of this Convention to adequately provide age- and gender-sensitive assistance, including medical care, rehabilitation and psychological support, as well as provide for social and economic inclusion of cluster munition victims. Such assistance may be provided,

inter alia, through the United Nations system, international, regional or national organisations or institutions,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and their International Federation,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or on a bilateral basis.

8. Each State Party in a position to do so shall provide assistance to contribute to the economic and social recovery needed as a result of cluster munition use in affected States Parties.

9. Each State Party in a position to do so may contribute to relevant trust funds in order to facilitate the provision of assistance under this Article.

10. Each State Party that seeks and receives assistance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 order to facilitate the timely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facilitation of the entry and exit of personnel, materiel and equipmen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taking into consideration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11. Each State Party may, with the purpose of developing a national action plan, request the United Nations system, regional organisations, other States Parties or other competent inter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institutions to assist its authorities to determine, inter alia:

(a) The nature and extent of cluster munition remnants located in areas 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b) The financial, technological and human resources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c) The time estimated as necessary to clear and destroy all cluster munition remnants located in areas 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d) Risk reduction education programmes and awareness activities to reduce the incidence of injuries or deaths caused by cluster munition remnants;

(e) Assistance to cluster munition victims; and

(f) The coordin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State Party concerned and the relevant governmental, inter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entities that will work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12. States Parties giving and receiving assistance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cooperate with a view to ensuring the full and prompt implementation of agreed assistance programmes.

Article 7

Transparency measures

1. Each State Party shall report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s soon as practicable, and in any event not later than 180 day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that State Party, on:

(a) The national implementation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9 of this Convention;

(b) The total of all cluster munitions, including explosive submuni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rticle 3 of this Convention, to include a breakdown of their type, quantity and, if possible, lot numbers of each type;

(c)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cluster munition produced by that State Party prior to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it, to the extent known, and those currently owned or possessed by it, giving, where reasonably possible, such categories of information as may facilitate identification and clearance of cluster munitions; at a minimum, this information shall include the dimensions, fusing, explosive content, metallic content, colour photographs and other information that may facilitate the clearance of cluster munition remnants;

(d) The status and progress of programmes for the conversion or decommissioning of production facilities for cluster munitions;

(e) The status and progress of programmes for the destruc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is Convention, of cluster munitions, including explosive submunitions, with details of the methods that will be used in destruction, the location of all destruction sites and the applicable safety and environmental standards to be observed;

(f) The types and quantities of cluster munitions, including explosive submunitions, destroy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details of the methods of destruction used, the location of the destruction sites and the applicable safety and environmental standards observed;

(g) Stockpiles of cluster munitions, including explosive submunitions, discovered after reported completion of the programm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e) of

this paragraph, and plans for their destruc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is Convention;

(h) To the extent possible, the size and location of all cluster munition contaminated areas 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to include as much detail as possible regarding the type and quantity of each type of cluster munition remnant in each such area and when they were used;

(i) The status and progress of programmes for the clearance and destruction of all types and quantities of cluster munition remnants cleared and destroy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of this Convention, to include the size and location of the cluster munition contaminated area cleared and a breakdown of the quantity of each type of cluster munition remnant cleared and destroyed;

(j) The measures taken to provide risk reduction education and, in particular, an immediate and effective warning to civilians living in cluster munition contaminated areas 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k) The status and progress of implementation of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 5 of this Convention to adequately provide age- and gender- sensitive assistance, including medical care, rehabilitation and psychological support, as well as provide for social and economic inclusion of cluster munition victims and to collect reliable relevant data with respect to cluster munition victims;

(l) The name and contact details of the institutions mandated to provide information and to carry out the measures described in this paragraph;

(m) The amount of national resources, including financial, material or in kind, alloc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s 3, 4 and 5 of this Convention; and

(n) The amounts, types and destination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provided under Article 6 of this Convention.

2. The information provid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updated by the States Parties annually, covering the previous calendar year, and report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not later than 30 April of each year.

3.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ransmit all such reports received to the States Parties.

Article 8

Facilitation and clarification of compliance

1. The States Parties agree to consult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o work together in a spirit of cooperation to facilitate compliance by States Parties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2. If one or more States Parties wish to clarify and seek to resolve questions relating to a matter of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by another State Party, it may submit,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 Request for Clarification of that matter to that State Party. Such a request shall be accompanied by all appropriate information. Each State Party shall refrain from unfounded Requests for Clarification, care being taken to avoid abuse. A State Party that receives a Request for Clarification shall provide,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ithin 28 days to the requesting State Party all information that would assist in clarifying the matter.

3. If the requesting State Party does not receive a response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ithin that time period, or deems the response to the Request for Clarification to be unsatisfactory, it may submit the matter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o the next Meeting of States Partie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ransmit the submission, accompanied by all appropriate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Request for Clarification, to all States Parties. All such information shall be presented to the requested State Party which shall have the right to respond.

4. Pending the convening of any Meeting of States Parties, any of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may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o exercise his or her good offices to facilitate the clarification requested.

5. Where a matter has been submitted to it pursuant to paragraph 3 of this Article, the Meeting of States Parties shall first determine whether to consider that matter further, taking into account all information submitted by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If it does so determine, the Meeting of States Parties may suggest to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ways and means further to clarify or

resolve the matter under consideration, including the initiation of appropriate procedures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In circumstances where the issue at hand is determined to be due to circumstances beyond the control of the requested State Party, the Meeting of States Parties may recommend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the use of cooperative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6 of this Convention.

6. In addition to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paragraphs 2 to 5 of this Article, the Meeting of States Parties may decide to adopt such other general procedures or specific mechanisms for clarification of compliance, including facts, and resolution of instances of non-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s it deems appropriate.

Article 9

National implementation measures

Each State Party shall take all appropriate legal, administrative and other measures to implement this Convention, including the imposition of penal sanctions to prevent and suppress any activity prohibited to a State Party under this Convention undertaken by persons or on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Article 10

Settlement of disputes

1. When a dispute arises between two or more States Partie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shall consult together with a view to the expeditious settlement of the dispute by negotiation or by other peaceful means of their choice, including recourse to the Meeting of States Parties and referral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conformity with the Statute of the Court.

2. The Meeting of States Parties may contribute to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 by whatever means it deems appropriate, including offering its good offices, calling upon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to start the settlement procedure of their choice and recommending a time-limit for any agreed procedure.

Article 11

Meetings of States Parties

1. The States Parties shall meet regularly in order to consider and, where necessary, take decisions in respect of any matter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 (a) The operation and status of this Convention;
- (b) Matters arising from the reports submitted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 (c)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is Convention;
- (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o clear cluster munition remnants;
- (e) Submissions of States Parties under Articles 8 and 10 of this Convention; and
- (f) Submissions of States Parties as provided for in Articles 3 and 4 of this Convention.

2. The first Meeting of States Parties shall be conven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ithin one year of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The subsequent meetings shall be conven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nually until the first Review Conference.

3. States not party to this Convention,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sations or institutions, regional organisations,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and relevant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may be invited to attend these meetings as observer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 rules of procedure.

Article 12

Review Conferences

1. A Review Conference shall be conven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five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urther Review Conferences shall be conven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f so requested by one or more States Parties, provided that the interval

between Review Conferences shall in no case be less than five years. All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shall be invited to each Review Conference.

2. The purpose of the Review Conference shall be:

- (a) To review the operation and status of this Convention;
- (b) To consider the need for and the interval between further Meetings of States Par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11 of this Convention; and
- (c) To take decisions on submissions of States Parties as provided for in Articles 3 and 4 of this Convention.

3. States not party to this Convention,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sations or institutions, regional organisations,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and relevant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may be invited to attend each Review Conference as observer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 rules of procedure.

Article 13

Amendments

1. At any time after its entry into force any State Party may propose amendments to this Convention. Any proposal for an amendment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circulate it to all States Parties and shall seek their views on whether an Amendment Conference should be convened to consider the proposal. If a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notif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no later than 90 days after its circulation that they support further consideration of the proposal,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convene an Amendment Conference to which all States Parties shall be invited.

2. States not party to this Convention,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sations or institutions, regional organisations,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and relevant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may be invited to attend each Amendment Conference as observer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 rules of procedure.

3. The Amendment Conference shall be held immediately following a Meeting of States Parties or a Review Conference unless a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request that it be held earlier.

4. Any amendment to this Convention shall be adopted by a majority of two-thirds of the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at the Amendment Conference. The Depositary shall communicate any amendment so adopted to all States.

5. An amendment to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for States Parties that have accepted the amendment on the date of deposit of acceptances by a majority of the States which were Parties at the date of adoption of the amendment. Thereafter it shall enter into force for any remaining State Party on the date of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acceptance.

Article 14

Costs and administrative tasks

1. The costs of the Meetings of States Parties, the Review Conferences and the Amendment Conferences shall be borne by the States Parties and States not party to this Convention participating therein,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Nations scale of assessment adjusted appropriately.

2. The costs incurr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under Articles 7 and 8 of this Convention shall be borne by the States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Nations scale of assessment adjusted appropriately.

3. The performance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administrative tasks assigned to him or her under this Convention is subject to an appropriate United Nations mandate.

Article 15

Signature

This Convention, done at Dublin on 30 May 2008, shall be open for signature at Oslo by all States on 3 December 2008 and thereafter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until its entry into force.

Article 16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1. This Convention is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by the Signatories.
2. It shall be open for accession by any State that has not signed the Convention.
3.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epositary.

Article 17

Entry into force

1.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sixth month after the month in which the thir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has been deposited.
2. For any State that deposits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 thir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sixth month after the date on which that State has deposited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Article 18

Provisional application

Any State may, at the time of its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declare that it will apply provisionally Article 1 of this Convention pending its entry into force for that State.

Article 19

Reservations

The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subject to reservations.

Article 20

Duration and withdrawal

1. This Convention shall be of unlimited duration.
2. Each State Party shall, in exercising its national sovereignty, have the right to withdraw from this Convention. It shall give notice of such withdrawal to all other States Parties, to the Depositary and to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uch instrument of withdrawal shall include a full explanation of the reasons motivating withdrawal.
3. Such withdrawal shall only take effect six months after the receipt of the instrument of withdrawal by the Depositary. If, however, on the expiry of that six-month period, the withdrawing State Party is engaged in an armed conflict, the withdrawal shall not take effect before the end of the armed conflict.

Article 21

Relations with States not party to this Convention

1. Each State Party shall encourage States not party to this Convention to ratify, accept, approve or accede to this Convention, with the goal of attracting the adherence of all States to this Convention.
2. Each State Party shall notify the governments of all States not party to this Conven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shall promote the norms it establishes and shall make its best efforts to discourage States not party to this Convention from using cluster munitions.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of this Convention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States Parties, their military personnel or nationals, may engage in military cooperation and operations with States not party to this Convention that might engage in activities prohibited to a State Party.
4. Nothing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shall authorise a State Party:
 - (a) To develop, produce or otherwise acquire cluster munitions;

- (b) To itself stockpile or transfer cluster munitions;
- (c) To itself use cluster munitions; or
- (d) To expressly request the use of cluster munitions in cases where the choice of munitions used is within its exclusive control.

Article 22

Depositar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s hereby designated as the Depositary of this Convention.

Article 23

Authentic texts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equally authentic.

[참고 자료-1]

허니웰(Honeywell) 프로젝트

번역 정리 _ 최정민(무기제로팀)

- 허니웰사는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 위치해 있음. 이곳에서는 집속탄, 강철셀 안에 패키징되어 있는 소형강철볼베어링을 생산. 이러한 대인살상용 무기가 폭발할 때 강철 볼베어링이 1초에 2,200개가 발사된다고 함. 이것뿐만 아니라 허니웰은 다른 무기, 공산품 등도 생산하고 있음.

- 사람들이 허니웰사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1967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전범재판에서 버틀란드 러셀이 베트남 민중들을 향해 집속탄을 사용한 것을 비난한 것이었고 1968년 10월에는 스톡턴 린드가 해방잡지에 편집자주로 무기, 특히 베트남 전쟁과 관련 있는 무기들을 생산하는 데 관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감시하자고 사람들에게 주장한 것이었음.

- 1968년 12월 미네아폴리스 사람들, 허니웰 프로젝트 시작. 처음부터 그들은 그들의 목표에 대해 분명히 하고 있었다고 함.

- ▶ 집속탄과 다른 무기의 연구, 개발, 생산을 멈출 것
- ▶ 일자리를 잃지 않고 평화적으로 산업을 전환할 것

- 처음부터 비폭력적 실천을 했다 함. 이 프로젝트의 창시자들은 계급분석을 했고 노동자들이 아니라 이윤을 가져가는 사람, 의사결정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었다고 함. “5년 안에 못하면 아예 관두자”고 하면서 서로 독려했다 함.

-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6개월 동안 연구하고 회사 사무실과 공장의 지도를 그

리고 집속탄이 시민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겨누는 것이라는 거짓말에 초점을 맞춰 노동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함.

- 비폭력정신으로 조직가들은 허니웰사의 이사회 회장을 만남.

- 집속탄이 생산되는 공장 2개 앞에서 리플렛을 나눠주기 시작함.

- 1969년 4월, 50명의 활동가들이 집속탄의 끔찍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허니웰사의 정기 주주총회장 바깥에서 시위를 벌임. 그들은 주주총회에서 10분간의 발언기회를 가졌고 회사 측의 답변은 “정부가 와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의무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함. 이 시위가 알려지고 조합 집행부와 진보적 시민들이 프로젝트를 찾았다 함. - 허니웰 프로젝트는 14개의 지역 그룹들을 조직했고 사람들은 주주총회에 주식들을 가져오기 시작함. 1970년 4월, 허니웰 프로젝트는 3,000명의 시위대를 조직하여 허니웰 정기주주총회의 안과 밖을 둘러쌌고 결국 14분밖에 회의가 이어지지 못했다고 함. 반전운동의 이 새로운 전략을 취재하기 위해 기자단도 그곳에 함께함.

- 스피치 투어는 다른 지역의 캠페인에 많은 영감을 줌. 1971년 두 개의 국가그룹이 허니웰사의 집속탄 제조에 제동을 걸기 위해 캠페인에 들어감. 지역 조직에는 학교 캠퍼스에서 징집을 반대하기 위한 학생들과 평화적 전환가능성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 집속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몇몇 사람들이 허니웰사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만듦. 회사는 보다 세련된 방식을 취함. 그들은 4페이지짜리 팸플릿을 제작했는데 그것은 허니웰 프로젝트가 제기한 모든 문제에 관한 답변이었고 전 세계의 100,000 노동자들에게 배포함. 그들은 시위대와 대화하지 말 것을 독려하는 메모를 노동자들에게 보내고 그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함. 허니웰사는 지역사회에 보다 많은 돈을 기부하기 시작했다고 함. 또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함. 허니웰은 어떤 압력을 분명히 받고 있었음.

- 1975년 4월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1975년부터 1980년까지 법정소송을 제외하고 캠페

인은 소강상태에 들어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허니웰 프로젝트 멤버들과 다른 지역 평화그룹들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공동모의를 했다는 것으로 허니웰사와 FBI를 고소함. FBI는 1969년부터 1972년까지 그룹 내에 프락치를 심어두었고 그것에 대해 인정했지만 어떤 잘못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받을 뻔. 이 사건은 1985년 종결되었는데 70,000달러의 피해보상금을 받았음. 허니웰 프로젝트는 ‘Shovels for Laos’라는 단체에게 돈을 기부했음.

- 1981년 허니웰 프로젝트는 다시 조직됨. 1982년 주주총회에서는 MX미사일 계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토론을 장악했음. 1982년 허니웰 프로젝트는 또한 허니웰사가 이스라엘 군대가 베이루트를 폭력하기 위해 사용할 집속탄을 만든다는 것을 발견함. 그해 36명의 사람들이 회사 본부 앞에서 비폭력행동을 하다 체포됨. 허니웰 프로젝트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함에 있어 참여적인 구조를 만들어 냄.

- 비폭력트레이닝 또한 매우 중요했다 함. 시위들은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음. 1983년 크루즈와 퍼싱 미사일의 서유럽 배치 전에 577명의 사람들이 하루 동안 본부를 폐쇄해 체포됨. 법정도 투쟁의 일부였음. 그들은 이러한 무기들이 만드는 손실에 관한 이슈를 제기할 수 있었고 1년 동안 법정을 묶어둘 수 있었음.

- 1982년부터 1990년까지 1년에 2번 허니웰 프로젝트는 비폭력시민불복종행동을 조직 하였음. 그들은 집속탄 생산을 중단하고 경제적 전환을 결의할 것을 주주들에게 요구하는 편지를 씀. 그들의 전략은 국가적으로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는 한편 지역 조직에 근거한 것이었음. 전국적으로, 국제적으로 가해지는 압력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었음.

- 1980년대 그들은 유명 인사들을 참여시켜 그들의 활동을 알려나갔음. 언론의 관심도 좋았음. 물론 경제적 전환 문제에 대한 것보다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것에 더 많은 초점을 두기는 했지만. “60분”이라는 미국의 매우 유명한 TV 뉴스에서 허니웰사의 부분을 촬영하긴 했지만 허니웰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춘 부분을 삭제하라는 압력에 굴복해야 했다 함.

- 1968년부터 1975년 허니웰사 이사회 회장을 지냈던 사람은 허니웰 프로젝트와 만남을

가졌지만 그가 떠나고 취임한 새로운 CEO는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것이 10년에 걸친 시위 때문이라 판단하고 허니웰 프로젝트와의 만남을 거부했다고 함.

- 1984년 허니웰사는 그들이 평화만들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평화만들기의 가능성(Prospect for Peacemaking)”이라는 포럼을 만듦. 그들은 다른 평화그룹과는 만났지만 허니웰 프로젝트와의 만남은 거부함.

- 무기 제조업체들은 다른 공산품들을 많이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허니웰 보이콧 캠페인은 요구되지 않음.

- 1989년 허니웰사는 무기부서를 매각하려했으나 누구도 사려하지 않았음. 무기부서가 팔리지 않자 그들은 Alliant Tech Systems라는 다른 회사를 차림.

- 허니웰사는 무기부서 매각은 냉전의 종식을 포함한 경제적 요소들에 달려있다고 말함. 아직까지는 무기부서를 해체하는 것보다는 성공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있음. Alliant Tech Systems은 세계에서 지뢰와 총알을 생산하는 가장 큰 기업임. 허니웰사는 시위대들의 영향은 전혀 없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들의 행동은 정반대였음. 1995년 Alliant Action이 만들어짐.

- 허니웰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성과를 남겼음. 모든 사람들이 집속탄이 뭔지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 무기들이 더 이상 눈에 띄지 않게 되었음. 이것은 이러한 무기 사용과 전쟁에 대한 반대를 가속화시켰음. 허니웰 프로젝트는 전쟁에서 기업의 역할을 가시화시켰고 다른 반기업 캠페인들의 모델, 특히 비폭력직접행동의 사용에 있어 모델이 되었음. 조직화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미네소타 지역의 강력한 진보운동을 발생시켰음.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집속탄의 생산은 계속되고 있음. 허니웰 프로젝트의 도전이 이러한 죽음의 시장을 끝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성공적인 방법을 찾아낸 것임.

“영구불변하는 전쟁경제를 감안할 때, 운동은 효과적으로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우리는 메르세데스를 사지 않는다. : 보이콧 집속탄!

번역 정리 _ 최정민(무기제로팀)

이 캠페인은

- 다임러 AG(Daimler AG) 社가 메르세데스(Mercedes)의 자동차 산업 시작. 그러나 다임러는 더 이상 차만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며 무기와 다른 군수품들 또한 생산.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uropean Aeronautics Defence and Space Company, EADS)과 다른 피투자자들을 통해 다임러는 핵무기 전투폭격기와 수송시스템의 생산에 연결. 이 외에도 다임러는 집속탄과 집속탄 수송을 위한 미사일 생산에도 각각 관여하고 있음. 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임러는 미래에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의 가장 큰 주주가 될 것임.
- 1990년 “군축 다임러”라는 모토 하에 “다임러-벤츠의 비판적인 주주들(Critical Shareholders of Daimler-Benz)”이 조직되었고, 2007년 “다임러의 비판적인 주주들(Critical Shareholders of Daimler, KAD)”로 명칭이 변경. 이들 저항의 중점은 “우리는 메르세데스를 사지 않는다. : 보이콧 집속탄!”이라는 캠페인.

목표

- 이 캠페인의 목표는 매우 명확. 바로 다임러가 무기 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는 것. 그들의 중점은 특히 집속탄에 맞춰져 있음. “우리는 메르세데스를 사지 않는다. : 보이콧 집속탄!” 캠페인은 미사일 운반선 대신 깨끗한 탈 것을 요구. 이 캠페인은 또 무기 거래에 회사들이 관여하는 것에 대한 대중적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함. 마지막으로 집속탄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

행동들

- 이 캠페인은 몇 년간 총회가 개최되었던 베를린 페어그라운드 ICC(Berlin Fairgrounds ICC)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서의 직접행동을 조직. “다임러 블러드칵테일(Daimler Bloodcocktail)”이라는 제목의 직접행동은 ‘다임러의 비판적인 주주들’ 회원들이 웨이터

복장을 하고 상징적인 빨간주스를 서빙하는 것이었는데 비윤리적인 무기 생산과 비인간적인 다임러·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의 무기 수출에 대해 관심을 끌기 위한 것. 그들은 또한 “별의 그림자 안에서(In the Shadow of the Star)”라는 대안리포트를 발간하였는데 정식 비즈니스리포트와 팜플렛에서는 무시된 다임러 비즈니스 정책의 어두운 면을 묘사.

- 2007년 10월에는 다양한 평화그룹에서 온 활동가들이 10개 도시의 메르세데스 건물에서 시위를 벌임. 2007년 11월 초, 바덴-뷔르템베르크(독일의 자연과 환경보호를 위한 조직)의 BUND라는 청년조직이 울름(Ulm)시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의 거대한 집속탄 부지를 점거하기도 했음.

- 2009년의 직접행동은 다임러 AG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 N.V. 뿐만 아니라 프랑크푸르트의 IAA에도 초점을 맞췄음.

성공

- 독일 주주법(shareholders' law)에 따르면 각 주주들은 말할 권리, 정보를 얻을 권리, 총회에서 행동할 권리를 갖음. 단체의 비판과 시위는 총회장 입구에서 멈출 필요가 없이 총회장 안으로 들어가도 무방.

- 최초의 큰 성공은 단체의 비판이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 무기 비즈니스에서 차와 무기의 생산에 관련한 정보를 받은 후 유니세프는 2005년 다임러크라이슬러를 스폰서 명단에 넣기를 거부. 그리고 벨기에는 2006년 2월 집속탄을 완전히 포기한 최초의 나라가 되었음.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은 독일 사회에서 이에 관한 토론을 이끌어 냈으며 다임러·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을 집속탄 생산자로 인식하게 하였음.

- 집속탄 반대 캠페인 전체에서 다른 큰 성공은 100여 개국이 오슬로 집속탄 회의(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in Oslo)에 사인했다는 것.

캠페인은 현재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캠페인은 다임러가 완전히 어떠한 무기회사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할 때까지 계속될 것임. 따라서 다임러에 반대하는 행동과 모임들을 여전히 조직하고 있음. 웹사이트에서는 캠페인에 참가할 것을 호소하고 있고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음.

내 돈, 양심적?

- 무기제조업체, 독재, 인권을 해치거나 심각한 환경 파괴를 가져오는 회사들... 은행은 이런 곳에 우리의 돈을 투자함. 이런 투자는 사람, 환경 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전혀 기여할 수 없음. 이러한 이유로 벨기에 NGO인 Netwerk Vlaanderen은 회사들이 이러한 투자를 그만둬야 하며 공공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함.
- 네트워크는 은행 고객들이 그들이 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내 돈, 양심적?”이란 캠페인을 해옴. 이 캠페인은 또한 은행도 무엇이 그들의 책임 인지를 인식하고 이후 지속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웹사이트 <http://www.bankgeheimen.be/bankgeheimen.html?lang=en>

목표

- “내 돈, 양심적?” 캠페인은 무기 생산자들로부터 투자를 회수할 것을 은행에 요청하고 이후 논란의 무기생산자 및 다른 모호한 투자사례로부터 투자를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은 은행에 대해 논란적인 무기, 독재자를 지원하거나 무력분쟁을 지원하는 회사들, 심각한 환경 파괴를 가져오는 활동들,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회사에 투자를 중단하고 윤리적인 기준을 세울 것. 어떤 활동에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할 것, 그래서 고객들과 정부가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할 것. 지속가능한 투자 정책을 계발하고 이행할 것.
- 정부에 대해서는 투자와 관련해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윤리적 투자를 장려하며 금융부문에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을 세울 것, 사회적 책임활동에 투자하고 지속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

행동들

- Netwerk Vlaanderen은 모호한 투자 관행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창조적인 행동을 기획, 실천하고 있음. 또한 젊은 친구들, 성인, 단체들을 교육하기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함. 보통 독일어로 진행됨.
- 은행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람들이 지역 은행 지점에 항의편지를 쓰거나 직접 방문하여 투자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캠페인을 조직하였음. 모든 고객은 그들의 돈이 어떻게 투자되는지 알 권리가 있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은행 직원을 만났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유용한 질문들의 리스트가 올려져 있음. 또한 친구, 가족, 동료들에게 지속가능한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설득하거나 은행상품을 구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

성공들

- 캠페인은 지난 몇 년간 상당한 성공을 거뒀음. 이는 훌륭한 연구, 로비활동, 캠페인, 창조적인 행동 등이 어우러진 결과임. 예를 들어 4개의 대형 은행은 무기 산업 투자 계획을 폐기했음. Fortis는 더 이상 대인지뢰, 생물 및 화학무기, 핵무기, 짐승탄 생산자에게 직접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음. Dexia는 더 나아가 무기 산업 대부분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함. 가장 논쟁적인 무기뿐만 아니라 전투기, 재래식 탄, 잠수함 및 탄약 공장 등을 포함한 무기 시스템들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기로 함. ING는 2005년 3월 일찍이 대인지뢰, 생물 및 화학 무기, 짐승탄, 핵무기 및 우라늄 무기 등 논쟁적인 무기 시스템에 투자를 철회할 것이라 밝힘. 이 세 개의 은행 정책은 오로지 자신들의 자기용자나 직접투자에만 해당되는 것이어서 한계는 있음.

- 반대로 KBC 그룹은 보다 일관된 정책을 내놓았음. KBC 이 용인할 수 없는 무기 시스템 생산자들은 모든 KBC의 생산물들에서 제외됨. KBC investment funds는 또한 대인지뢰, 짐승탄, 우라늄 무기, 생물 및 화학무기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음.

- 오로지 AXA만 아주 조금이거나 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음. 국제적 수준에서 AXA는 대인지뢰에 대한 투자조차 철회하지 않고 있음. AXA 벨기에는 다른 품목을 비롯 대인지뢰도 생산하는 싱가포르 기업인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였음. 이렇게 AXA 벨기에는 간단히 벨기에 법에 부합해 버림.

- 또 다른 성공은 2004년 6월 이 캠페인의 결과로 벨기에가 세계 최초로 대인지뢰를 생산, 사용, 비축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임.

오늘날 캠페인은...

- 캠페인을 함께 하고 있는 Netwerk Vlaanderen과 평화단체들은 일단 이러한 성과들에 만족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음.

- 아직까지 어떤 은행도 온전히 무기 산업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 은행들이 그들의 정책이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나 그 정책의 이행을 통제하기 위해선 완전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

[참고 자료-2]

우리나라에서 확산탄을 생산,수출하는 대표적 기업은 (주)한화와 (주)풍산이다. 외국에서는 확산탄 금지 운동의 방법으로 기업에 대한 압박 그리고 해당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 및 자산에 대한 금지 캠페인이 광범하게 벌어져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런 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의미에서 두 기업에 대해 투자하고 있는 단위의 명단을 첨부한다. 자료의 출처는 외국의 평화운동단체인 PAX CHRISTY (<http://www.netwerkvlaanderen.be/nl/files/documenten/campagnes/bankenwapens/Het%20hele%20rapport.pdf>)이며 번역은 확산탄 금지 운동에 함께 하고 있는 무기제로팀에서 하였다.

- 한화 풍산 두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의 투자사들 -

- 천안북일교육재단(자산관리) : 2009년 3월, 천안북일교육재단은 한화 주식의 1.83%를 소유하거나 관리하였는데 이것은 31,000,000\$(약 360억)의 가치를 가진다.⁸¹⁾
- 대우증권(투자신탁) : 2008년 3월, 한화는 1,200억 규모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금은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발행채권인수단의 일부인 대우증권은 13,200,000\$(약 150억)의 지분을 승인했다.⁸²⁾ 2008년 6월, 한화는 1,700억 규모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금은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발행채권인수단의 일부인 대우증권은 16,350,000\$(약 186억)의 지분을 승인했다.⁸³⁾
- 동부증권(투자신탁) : 2009년 2월, 한화는 2,600억 원 상당의 채권을 발행했다. 발행은 3가지 트랑셰(tranche)로 나뉘어 이뤄졌는데 700억 원은 3년 만기 채권, 1,400억 원은 2년 반 만기 채권, 500억 원은 1년 만기 채권이였다. 수익금은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동부증권은 발행채권인수단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50,000\$(약 230억)의 지분을 승인했다.⁸⁴⁾
- 한국수출입은행(투자신탁) : 2007년 5월, 한화는 30,000,000\$(약 350억 원)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금은 운영자본으로 사용되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발행채권인수단에 참여하고 있으며 3,000,000\$(약 30억 원)의 지분을 승인했다.⁸⁵⁾
- 한화증권(투자신탁) : 2008년 3월, 한화는 1,2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금은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한화증권은 발행채권인수단

81) Thomson ONE Database, 2009년 6월 방문. (www.thomsonone.com)

82) Tearsheet Deal Number: 1964808109, Thomson ONE Database, 2008년 3월 20일.

83) Tearsheet Deal Number: 1964808109, Thomson ONE Database, 2008년 3월 20일.

84) Tearsheet Deal Number: 2052251109, Thomson ONE Database, 2009년 2월 19일,

Tearsheet Deal Number: 2052250109, Thomson ONE Database, 2009년 2월 19일,

Tearsheet Deal Number: 2052249109, Thomson ONE Database, 2009년 2월 19일.

85) Tearsheet Deal Number: 1882187006, Thomson ONE Database, 2007년 5월 1일.

에 참여하고 있으며 13,200,000\$(약 150억)의 지분을 승인했다.⁸⁶⁾ 2008년 6월, 한화는 1,7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금은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한화증권은 발행채권인수단에 참여하고 있으며 13,200,000\$(약 150억)의 지분을 승인했다.⁸⁷⁾ 2009년 2월, 한화는 2,6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발행은 3가지 트랑셰(tranche)로 나뉘어 이뤄졌는데 700억 원은 3년 만기 채권, 1,400억 원은 2년 반 만기 채권, 500억 원은 1년 만기 채권이였다. 수익금은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한화증권은 발행채권인수단에 참여하고 있으며 27,000,000\$(약 310억)의 지분을 승인했다.⁸⁸⁾

- HMC투자은행(투자신탁) : 2008년 6월, 한화는 1,7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금은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HMC투자은행은 발행채권인수단에 참여하고 있으며 16,350,000\$(약 190억)의 지분을 승인했다.⁸⁹⁾
- 국민은행(투자신탁) : 2007년 7월, 한화는 2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금은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한누리투자증권은 현재 국민은행의 일부이며 10,900,000\$(약 130억)의 지분을 승인했다.⁹⁰⁾ 2008년 3월, 한화는 1,2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금은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국민은행은 발행채권인수단의 두 리더 중 하나이며 26,300,000\$(약 300억)의 지분을 승인했다.⁹¹⁾ 2008년 6월, 한화는 3,000만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금은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국민은행은 발행채권인수단의 두 리더 중 하나이며 3,000,000\$(약 30억)의 지분을 승인했다.⁹²⁾ 2008년 6월, 한화는 1,7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금은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국민은행은 발행채권인수단의 두 리더 중 하나이며 32,700,000\$(약 380억)의 지분을 승인했다.⁹³⁾ 2009년 2월, 한화는 2,6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발행은 3가지 트랑셰(tranche)로 나뉘어 이뤄졌는데 700억 원은 3년 만기 채권, 1,400억 원은 2년 반 만기 채권, 500억 원은 1년 만기 채권이였다. 수익금은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2008년 6월, 한화는 3,000만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금은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국민은행은 발행채권인수단에 참여하고 있으며 6,750,000\$(약 78억)

86) Tearsheet Deal Number: 1964808109, Thomson ONE Database, 2008년 3월 20일.

87) Tearsheet Deal Number: 1991470109, Thomson ONE Database, 2008년 6월 26일

88) Tearsheet Deal Number: 2052251109, Thomson ONE Database, 2009년 2월 19일,

Tearsheet Deal Number: 2052250109, Thomson ONE Database, 2009년 2월 19일,

Tearsheet Deal Number: 2052249109, Thomson ONE Database, 2009년 2월 19일.

89) Tearsheet Deal Number: 1991470109, Thomson ONE Database, 2008년 6월 26일.

90) Tearsheet Deal Number: 1886982109, Thomson ONE Database, 2007년 7월 4일.

91) Tearsheet Deal Number: 1964808109, Thomson ONE Database, 2008년 3월 20일.

92) Tearsheet Deal Number: 1973596006, Thomson ONE Database, 2008년 6월 2일.

93) Tearsheet Deal Number: 1991470109, Thomson ONE Database, 2008년 6월 26일.

의 지분을 승인했다.⁹⁴⁾

- 한국산업은행(투자신탁) : 2007년 5월, 한화는 3,000만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금은 운영자본으로 사용되었다. 한국산업은행은 발행채권인수단의 리더이며 17,000,000\$(약 200억)의 지분을 승인했다.⁹⁵⁾ 2007년 7월, 한화는 1,2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금은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한국산업은행은 54,400,000\$(약 630억)의 지분을 승인했다.⁹⁶⁾ 2008년 3월, 한화는 1,200만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금은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한국산업은행은 발행채권인수단의 두 리더 중 하나이며 26,300,000\$(약 300억)의 지분을 승인했다.⁹⁷⁾ 2008년 6월, 한화는 3,000만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금은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한국산업은행은 발행채권인수단의 두 리더 중 하나이며 7,000,000\$(약 80억)의 지분을 승인했다.⁹⁸⁾ 2008년 6월, 한화는 1,7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금은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한국산업은행은 발행채권인수단의 두 리더 중 하나이며 32,700,000\$(약 380억)의 지분을 승인했다.⁹⁹⁾ 2008년 10월, 풍산은 4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한국산업은행은 발행채권인수단의 두 리더 중 하나이다.¹⁰⁰⁾ 2009년 2월, 한화는 2,6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발행은 3가지 트랑셰(tranche)로 나뉘어 이뤄졌는데 700억 원은 3년 만기 채권, 1,400억 원은 2년 반 만기 채권, 500억 원은 1년 만기 채권이었다. 수익금은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한국산업은행은 발행채권인수단의 두 리더 중 하나이며 27,000,000\$(약 310억)의 지분을 승인했다.¹⁰¹⁾
- 한국투자증권(투자신탁) : 2007년 7월, 한화는 1,2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금은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한국투자증권은 21,800,000\$(약 250억)의 지분을 승인했다.¹⁰²⁾ 2008년 3월, 한화는 1,200만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금은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채권인수단에 참여하고 있으며 21,800,000\$(약 250억)의 지분을

94) Tearsheet Deal Number: 2052251109, Thomson ONE Database, 2009년 2월 19일.
Tearsheet Deal Number: 2052250109, Thomson ONE Database, 2009년 2월 19일.
Tearsheet Deal Number: 2052249109, Thomson ONE Database, 2009년 2월 19일.

95) Tearsheet Deal Number: 1882187006, Thomson ONE Database, 2007년 5월 1일.

96) Tearsheet Deal Number: 1886982109, Thomson ONE Database, 2007년 7월 4일.

97) Tearsheet Deal Number: 1964808109, Thomson ONE Database, 2008년 3월 20일.

98) Tearsheet Deal Number: 1973596006, Thomson ONE Database, 2008년 6월 2일.

99) Tearsheet Deal Number: 1991470109, Thomson ONE Database, 2008년 6월 26일.

100) Asian Currency Bonds, Euroweek . Issue: 1075, London, 2008년 10월 10일.

101) Tearsheet Deal Number: 2052251109, Thomson ONE Database, 2009년 2월 19일.

Tearsheet Deal Number: 2052250109, Thomson ONE Database, 2009년 2월 19일.

Tearsheet Deal Number: 2052249109, Thomson ONE Database, 2009년 2월 19일.

102) Tearsheet Deal Number: 1886982109, Thomson ONE Database, 2007년 7월 4일.

승인했다.¹⁰³⁾ 2008년 6월, 한화는 1,7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금은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채권인수단의 두 리더 중 하나이며 32,700,000\$(약 380억)의 지분을 승인했다.¹⁰⁴⁾ 2009년 2월, 한화는 2,6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발행은 3가지 트랑셰(tranche)로 나뉘어 이뤄졌는데 700억 원은 3년 만기 채권, 1,400억 원은 2년 반 만기 채권, 500억 원은 1년 만기 채권이었다. 수익금은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채권인수단의 두 리더 중 하나이며 60,750,000\$(약 700억 원)의 지분을 승인했다.¹⁰⁵⁾

- 메리츠증권(투자신탁) : 2009년 2월, 한화는 2,6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발행은 3가지 트랑셰(tranche)로 나뉘어 이뤄졌는데 700억 원은 3년 만기 채권, 1,400억 원은 2년 반 만기 채권, 500억 원은 1년 만기 채권이었다. 수익금은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메리츠증권은 발행채권인수단에 참여하고 있으며 13,500,000\$(약 160억 원)의 지분을 승인했다.¹⁰⁶⁾
- 미래에셋증권(자산관리) : 2009년 2월, 한화는 2,6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발행은 3가지 트랑셰(tranche)로 나뉘어 이뤄졌는데 700억 원은 3년 만기 채권, 1,400억 원은 2년 반 만기 채권, 500억 원은 1년 만기 채권이었다. 수익금은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미래에셋증권은 발행채권인수단에 참여하고 있으며 6,750,000\$(약 77억 원)의 지분을 승인했다.¹⁰⁷⁾ 2007년 7월, 한화는 1,2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금은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미래에셋증권은 10,900,000\$(약 124억 원)의 지분을 승인했다.¹⁰⁸⁾
- 국민연금관리공단(대부) : 2009년 3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한화 주식의 5%를 소유하거나 관리하였는데 이것은 85,000,000\$(약 980억)의 가치를 가진다.¹⁰⁹⁾
- 신한은행(투자신탁) : 2007년 5월, 한화는 3,000만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금은 운영자본으로 사용되었다. 신한은행은 발행채권인수단의 리더이며 10,000,000\$(약 12억)의 지분을 승인했다.¹¹⁰⁾ 2008년 3월, 한화는 1,200만 원 상당

103) Tearsheet Deal Number: 1964808109, Thomson ONE Database, 2008년 3월 20일.

104) Tearsheet Deal Number: 1991470109, Thomson ONE Database, 2008년 6월 26일.

105) Tearsheet Deal Number: 2052251109, Thomson ONE Database, 2009년 2월 19일, Tearsheet Deal Number: 2052250109, Thomson ONE Database, 2009년 2월 19일, Tearsheet Deal Number: 2052249109, Thomson ONE Database, 2009년 2월 19일.

106) Tearsheet Deal Number: 2052251109, Thomson ONE Database, 2009년 2월 19일, Tearsheet Deal Number: 2052250109, Thomson ONE Database, 2009년 2월 19일, Tearsheet Deal Number: 2052249109, Thomson ONE Database, 2009년 2월 19일.

107) Tearsheet Deal Number: 2052251109, Thomson ONE Database, 2009년 2월 19일, Tearsheet Deal Number: 2052250109, Thomson ONE Database, 2009년 2월 19일, Tearsheet Deal Number: 2052249109, Thomson ONE Database, 2009년 2월 19일.

108) Tearsheet Deal Number: 1886982109, Thomson ONE Database, 2007년 7월 4일.

109) Thomson ONE Database, 2009년 7월 방문. (www.thomsonone.com)

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금은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신한은행은 발행채권인수단에 참여하고 있으며 13,200,000\$(약 150억)의 지분을 승인했다.¹¹¹⁾ 2009년 2월, 한화는 2,6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발행은 3가지 트랑셰(tranche)로 나뉘어 이뤄졌는데 700억 원은 3년 만기 채권, 1,400억 원은 2년 반 만기 채권, 500억 원은 1년 만기 채권이였다. 수익금은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신한은행은 발행채권인수단의 두 리더 중 하나이며 6,750,000\$(약 78억 원)의 지분을 승인했다.¹¹²⁾

- 신흥증권(투자신탁) : 2007년 7월, 한화는 1,2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금은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신흥증권은 10,900,000\$(약 130억)의 지분을 승인했다.¹¹³⁾
- SK증권(투자신탁) : 2007년 4월, 풍산은 5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SK증권은 발행채권인수단을 이끌고 있다.¹¹⁴⁾ 2008년 10월, 풍산은 4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SK증권은 발행채권인수단의 두 리더 중 하나였다.¹¹⁵⁾
- 우리투자증권(투자신탁) : 2008년 3월, 한화는 1,200만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금은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우리투자증권은 발행채권인수단에 참여하고 있으며 13,200,000\$(약 150억)의 지분을 승인했다.¹¹⁶⁾ 2008년 6월, 한화는 1,7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금은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우리투자증권은 발행채권인수단의 두 리더 중 하나이며 16,350,000\$(약 190억)의 지분을 승인했다.¹¹⁷⁾ 2009년 2월, 한화는 2,6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발행은 3가지 트랑셰(tranche)로 나뉘어 이뤄졌는데 700억 원은 3년 만기 채권, 1,400억 원은 2년 반 만기 채권, 500억 원은 1년 만기 채권이였다. 수익금은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우리투자증권은 발행채권인수단의 두 리더 중 하나이며 6,750,000\$(약 78억 원)의 지분을 승인했다.¹¹⁸⁾

110) Tearsheet Deal Number: 1882187006, Thomson ONE Database, 2007년 5월 1일.

111) Tearsheet Deal Number: 1964808109, Thomson ONE Database, 2008년 3월 20일.

112) Tearsheet Deal Number: 2052251109, Thomson ONE Database, 2009년 2월 19일,

Tearsheet Deal Number: 2052250109, Thomson ONE Database, 2009년 2월 19일,

Tearsheet Deal Number: 2052249109, Thomson ONE Database, 2009년 2월 19일.

113) Tearsheet Deal Number: 1886982109, Thomson ONE Database, 2007년 7월 4일.

114) Asian Currency Bonds, Euroweek . Issue: 998, London, 2007년 4월 5일.

115) Asian Currency Bonds, Euroweek . Issue: 1075, London, 2008년 10월 10일.

116) Tearsheet Deal Number: 1964808109, Thomson ONE Database, 2008년 3월 20일.

117) Tearsheet Deal Number: 1991470109, Thomson ONE Database, 2008년 6월 26일.

118) Tearsheet Deal Number: 2052251109, Thomson ONE Database, 2009년 2월 19일,

Tearsheet Deal Number: 2052250109, Thomson ONE Database, 2009년 2월 19일,

Tearsheet Deal Number: 2052249109, Thomson ONE Database, 2009년 2월 19일.